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 도경옥 · 이성훈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 도경옥 · 이성훈

통일강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KINU 연구총서 15-08)

인 쇄 2015년 12월

발 행 201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호정씨엔피(02-2277-4718)

인 쇄 처 호정씨엔피

ISBN 978-89-8479-826-7 93340

북한 인권[北韓人權], 인권 개선[人權改選], 기술 협력[技術協力]

342.10911-KDC6 / 323.095193-DDC23 CIP2016001240

가 격 6,500원

© 통일연구원, 201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례	• 요약	vii
<hr/>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방법	4
	2. 연구 구성 및 기대효과	5
<hr/>		
II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개념, 용어 사용, 이론적 논의	7
	1. 기술협력의 개념과 용어 사용	9
	2. 기술협력 관련 이론적 논의: 인권규범의 사회화 과정과 국내적 개선	15
	3. 유엔 문서에 제시된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과 기술협력 논의: COI, UPR, 조약위원회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22
<hr/>		
III	기술협력 지역별 사례와 시사점	37
	1. 기술협력 지역별 사례	39
	2. 시사점	77
<hr/>		
IV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분류 및 방안	83
	1. 인권 기술협력 분류	85
	2. 인권 기술협력 방안	90
	3. 남북 양자 간 관계에서 기술협력 가능성 논의	95



V 결론

99

- 참고문헌 104
- 최근 발간자료 안내 109



표 차례

〈표 II-1〉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술협력 관련 용어 사용	11
〈표 II-2〉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술협력 관련 용어 사용	12
〈표 II-3〉 유엔 총회의 기술협력 관련 용어 사용	12
〈표 II-4〉 기술협력의 다양한 주체 및 객체	13
〈표 II-5〉 북한인권 관련 행위자 분류	14
〈표 II-6〉 국제인권규범의 5단계 사회화 과정	16
〈표 III-1〉 OHCHR 캄보디아 국가사무소의 주요 기술협력 활동	43
〈표 III-2〉 일본-캄보디아 법 및 사법 분야 기술협력 프로젝트 개요	54
〈표 III-3〉 특별보고관의 주요 자문내용	59
〈표 III-4〉 USAID-미얀마 협력 내용	61
〈표 III-5〉 법치 분야 지원 세부체계	69
〈표 III-6〉 중국의 국가인권행동계획 비교	76
〈표 III-7〉 4개국 기술협력 사업 비교	80
〈표 IV-1〉 북한에 대한 기술협력 단계별 접근	86
〈표 IV-2〉 유엔 인권기구와 북한 기술협력 사업 내용	87
〈표 IV-3〉 기술협력 사업의 내용에 따른 구분	88
〈표 IV-4〉 다자 간 국제기구 기술협력 행위자 구분	89
〈표 IV-5〉 행위자의 특성과 내용에 따른 구분	91

요약

인권 분야의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여전략의 일환이다. 기술협력은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북한 간 협력을 촉구하는 북한인권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술협력의 정의는 “국제인권기준을 국내법, 정책, 실천관행에 통합시키고 이러한 기준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역량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인권을 증진하려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협력의 구체적 영역으로는 ①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I)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지원, ② 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 대상 자문 및 지원, ③ 조약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지원, ④ 국가인권행동계획(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NHRAP) 및 인권교육에 대한 자문 및 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북한인권 개선논의에도 불구하고, 기술협력 자체가 국가의 동의와 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술협력 관련 국제사회와 개별국가 간 협력과 대화의 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술협력의 개념, 용어 사용, 이론적 논의 및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고,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북한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의 사례가 각각 제시되었는데, 캄보디아의 경우, 유엔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현장사무소가 설치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기술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미얀마 사례는 2011년 초대 민선 대통령 선출을 계기로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개혁과 더불어 인권 분야 기술협력이 확대된 경우이다. 스리랑카의 경우, 26년간 내전을 경험하였는데, 이후 유엔 차원의 전문가 패널을 통한 조사 및 보고서 발간을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우는 인권 분야 기술협력에 소극적이며 선택적이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기술협력을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해 왔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제시된 네 가지 사례들은 각각 기술협력 관련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 간 기술협력이 추진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내전 등 한 국가 내에서 벌어진 사건은 기술협력 추진의 요인이 된다는 점, 기술협력의 진행과정에서 정치성이 약한 분야에서 강한 분야로 나아간다는 점,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노력에 있어 법치지원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는 점, 경우에 따라 국가별 인권특별보고관이 적극적으로 기술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기술협력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비인권 분야에서 시작하여 간접적, 묵시적 인권협력을 거쳐 점차 직접적, 명시적 인권 기술협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인정하고 참여하고 있는 4대 인권조약과 UPR을 활용해야 하며, 국가인권행동계획·국가인권기구·사법제도·인권교육 등 여러 국가의 사례에서 공통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가입하고 참여하고 있는 유엔 내외의 기구와 제도 그리고 북한과 남한 동시수교국 또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북한 대사 역할을 겸하는 국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북한인권 개선 관련 국제사회의 기술협력에 대한 논의는 책임성 규명만 강조함으로써 자칫 치우치기 쉬운 북한인권 개선전략의 균형을 복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인권 개선을 병행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참여해 온 4대 조약위원회 및 UPR 절차 및 권고사항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요청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그 중에서도 기술협력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비정부행위자, 개별국가 등 다양한 국제적 행위자의 노력과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당국의 의지, 호응, 협조 나아가 북한 당국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 신장과 인권개선을 위한 주도적 역할이 요청된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권고사항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관건은 이러한 제안 및 실천과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 역량, 노력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실천의지가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이러한 대내외적 정책환경을 다방면으로 고려하되, 특히 본 연구에서 강조한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전략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기술협력, 관여전략,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행동계획, 인권 교육, 국제협력, 개별국가

Abstract

Technical Cooperation for Improving Human Rights

Han, Dong-ho et al.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is part of international community's engagement strategy toward North Korea. It is also considered as one of main strategies for the fundamental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that urges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HCHR.

Despite the various discussion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echnical cooperation itself has limits by the fact that it requires consent and will of the country. Nevertheles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can be derived by contemplating on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and dialogue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dividual countries related to technical cooperation. Thus, this study identifies the concept of technical cooperation, its usage, theoretical discussion, and specific cases, and seeks its feasibility of being applied to the case of North Korea. In order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n North Korea, this study addresses the cases of Cambodia, Myanmar, Sri Lanka, and China.

The four cases suggest various following implications related to technical cooperation: the respective country's determination is of utmost importance in order to pursue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dividual countries; the events happening within a country such as civil war could be constituted as a factor for pursuing technical cooperation; the process of technical cooperation could advance from low politics to high politics; the international efforts for technical cooperation emphasize the rule of law; the technical cooperation can be actively pursued by the special rapporteur for human rights of each countries in some cases.

To undertake the discussions for technic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we can think of approaching from non-human rights field and move on to indirect and tacit human rights cooperation to gradually shift to direct and explicit human rights technical cooperation regarding the reality in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eflect this policy environment for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from multiple angles and especially review the in-depth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community's strategy of technical cooperation - which this study underlines - and an assistance plan.

Keywords: technical cooperation, engagement strategy,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human rights educ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dividual countries



I. 서론

인권 분야의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이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법, 정책, 실천관행에 통합시키고 이러한 기준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역량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수준에서 인권을 증진하려는 국가를 지원”하는 국제사회 인권개선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¹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의 구체적 영역은 ①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I)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지원, ② 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 대상 자문 및 지원, ③ 조약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지원, ④ 국가인권행동계획(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NHRAP) 및 인권교육에 대한 자문 및 지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14년 2월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협력은 국제사회와 북한, 남한과 북한이 각각 북한에 대한 관여를 논의할 수 있는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에는 크게 압박(pressure)과 관여(engagement)의 두 가지 축이 있으며, 기술협력 논의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²

국제사회의 다양한 북한인권 개선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술협력 자체가 국가의 동의와 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

1. 이금순·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33.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인권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법치(rule of law)와 연관하여 국내 제도적 구축 및 강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United Nations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has been engaged since 1955 in assisting States, at their request, in the building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structures that have a direct impact on the overall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the maintenance of the rule of law.” UN OHCHR Website (www.ohchr.org).

2. 북한인권정책의 양자적 특성과 세부 전략 및 실천과제를 위한 논의로 한동호·도경옥,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참조.

한 기술협력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술협력 관련 국제사회와 개별국가 간 협력과 대화의 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술협력의 개념, 용어 사용, 이론적 논의 및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1.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이론 및 사례 연구를 통해 북한인권 연구 분야에 있어 기술협력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아가 한국의 다자적·양자적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분야는 크게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논의와 남북한 협력구도 속 북한인권 개선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 다자적 및 양자적 차원의 논의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개별국가 기술협력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자적 대북 인권정책의 틀을 구상할 수 있고, 남북한 협력구도 속 북한인권 개선과 기술협력 연계를 통해 양자적 대북 인권정책의 틀을 구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틀 속에서 다양한 유엔 기구들 간 협력 가능성 분석, 사안별 분석, 지역별 분석 등 인권개선과 기술협력에 대한 종합적 인식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 범위를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³ OHCHR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의 요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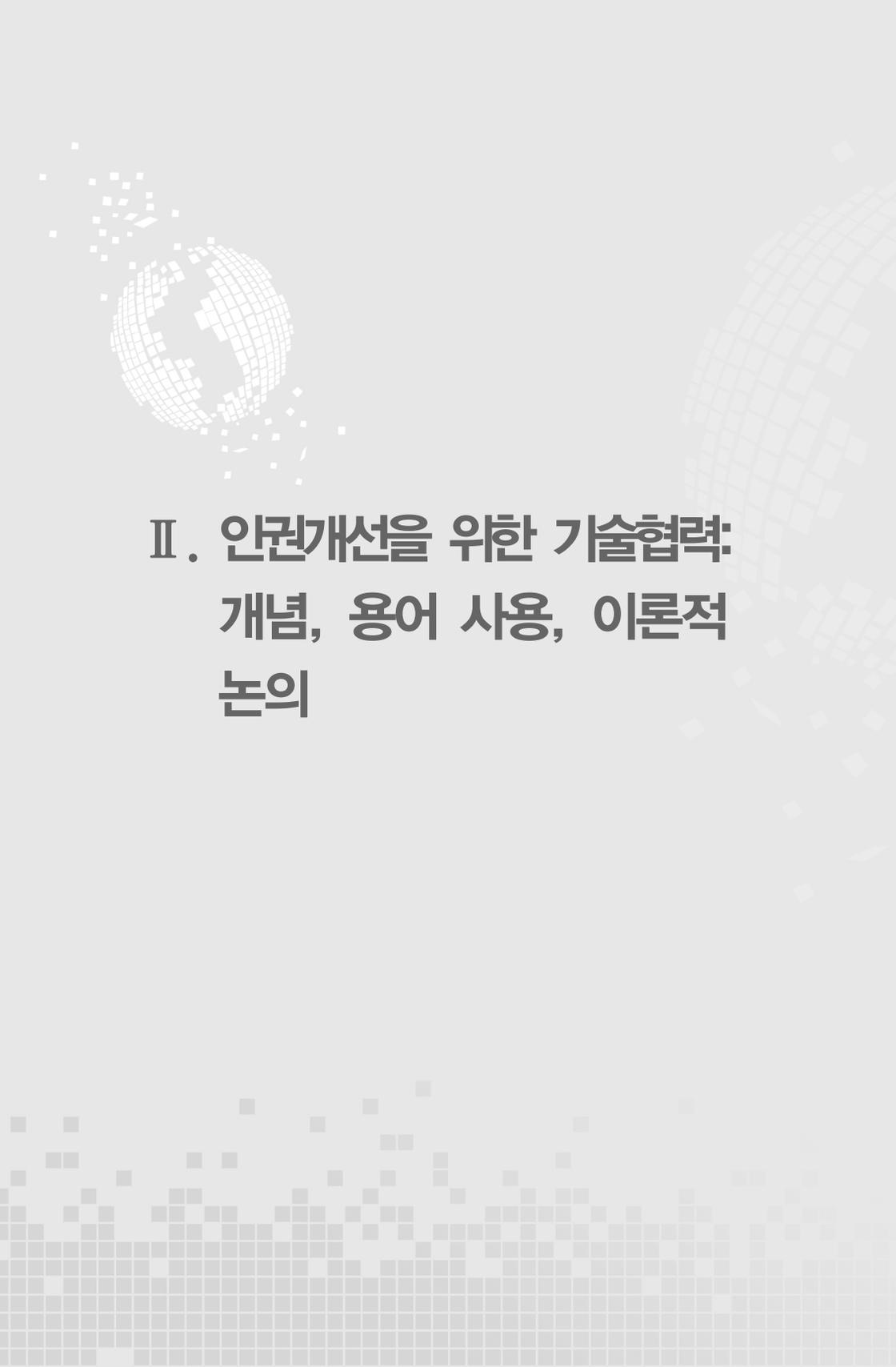
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개별국가의 기술협력 경험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동시에 필요한 경우 유엔 뿐 아니라 북한 관련 기술협력 영역에서 비정부기구 및 개별국가 주도적인 사례도 포함하기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OHCHR의 기술협력 프로그램 관련 문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유럽연합, 미국 등 개별국 차원의 인권 분야 기술협력 사례를 검토한다. 또한 기술협력 관련 국내외 보고서, 학술논문, 단행본, 각종 결과보고서 검토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으로서 기술협력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구성 및 기대효과

II장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의 가능성을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를 위해 기술협력 용어의 사용과 그 개념을 고찰한 후 이론적 관점에서 기술협력 논의를 전개한다. III장에서는 국제사회와 개별국가 간 상호작용을 통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어지는 IV장에서는 남북 간 인권대화의 관점에서 양자 간 기술협력 논의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정책 사안으로 접근하기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소개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구체적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기술협력을 통한 남북 간 인권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대북 인권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인권 분야에서 압박과 관여전략을 균형적으로 구사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 측면에서 대북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개념, 용어 사용, 이론적 논의

기술협력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여전략의 일환이다. 기술협력은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북한 간 협력을 촉구하는 북한인권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다.⁴ 그동안 기술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북한인권 개선방안으로서 기술협력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⁵

특히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I) 보고서 이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상호보완적 접근(two-track approach)이 제시되고, 압박(pressure)과 관여(engagement)의 균형이 요청되면서, 북한 내부 역량강화를 통한 기술협력 혹은 기술지원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절차 및 실행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기술협력의 개념과 용어사용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기술협력의 개념과 용어 사용

가. 기술협력 개념

기술협력은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과 역량구축(capacity-

4. 북한인권 개선 영역에서 기술협력 개념을 국제기준의 국내 법제도적 통합에 한정한다면, 북한 내 인권침해 요인 중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조화하고, 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 요청된다. 관련된 내용으로 이금순·김수암, 『북한인권침해 구조 및 개선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71~91; 구체적 개선전략에 대한 논의로 같은 책, pp. 131~150 참조.

5. 국제사회 인권개선 전략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 이금순·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p. 133~16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중 인권 분야 기술협력에 대한 세부내용은 같은 책, pp. 32~50 참조.

building) 양자를 포함하는 용어로 해당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건설적 대화와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어, 지식 및 역량 차원의 간격을 점검하고 그 해결을 도모하는 OHCHR의 필수적 활동 중 하나이다.⁶ OHCHR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기술협력은 해당국의 요청과 동의가 필수적이며, 해당국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실시하되 국내의 법, 정책, 제도 및 관례가 국제기준과 의무사항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점검하게 된다.⁷

인권 분야 관련 주제별 기술협력의 내용으로는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 관련 자문, 인권기구의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 사법 행정(administration of justice) 및 법관 교육, 인권문화에 기반한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 국가인권행동계획(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s: NHRAP) 등을 들 수 있다.

나. 기술협력 용어 사용

기술협력은 한 국가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여라는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인권이사회 이전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는 기술협력을 “Technical Cooperation and Advisory Services”로 사용했는데, 이는 기술협력의 개념 속에 자문기능도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경향은 자문을 의미하는 “Advisory Services”는 제외하고 “Technical Cooperation”만을 쓰고 있다.

유엔 총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인권위원회 포함)에서의 북한인권결

⁶- UN Doc. A/HRC/27/41 (24 July 2014), pp. 3~4.

⁷- *Ibid.*, p. 4.

의와 관련해서 보면 2003년부터 이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정치적 의미와 구별되는 의미에서 비정치적 사안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인권개선에 대한 법·제도적 자문 및 협력을 의미하는 경우 OHCHR을 중심으로 ‘기술협력’ 논의가 활용되어 왔다.⁸

<표 II-1>, <표 II-2>, <표 II-3>에서 드러나듯이,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결의 혹은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제출된 보고서에서 ‘기술협력’ 혹은 ‘기술지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뒤에 살펴보겠지만, 유엔 차원의 다양한 북한인권 관련 문서들을 분석해 보면, 여러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협력 관련 내용이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I-1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술협력 관련 용어 사용

Commission on Human Rights

Year	Report			Resolution		
	Technical Cooperation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Technical Cooperation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2003				1	0	0
2004				1	0	0
2005	1	1	0	3	0	0

출처: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및 특별보고관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및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⁸ 기술협력 포함,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을 전세계적 차원에서 제도적·정책적으로 적용하는 절차에 대한 포괄적 분석으로 David Forsythe,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71~116 참조.

● 표 II-2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술협력 관련 용어 사용

Human Rights Council

Year	Report			Resolution		
	Technical Cooperation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Technical Cooperation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2007	0	2	0			
2008	0	1	0	0	0	0
2009	0	1	0	0	0	0
2010	0	1	0	0	0	0
2011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2013	0	2	0	0	0	0
2014	0	3	0	0	0	0
2015	2	2	0	1	0	0

출처: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및 특별보고관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및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 표 II-3 유엔 총회의 기술협력 관련 용어 사용

General Assembly

Year	Report			Resolution		
	Technical Cooperation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Technical Cooperation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2005	0	1	0	1	0	0
2006	0	0	0	1	0	0
2007	0	1	0	1	0	0
2008	1	1	0	1	0	0
2009	0	1	0	1	0	0
2010	0	1	0	1	0	0
2011	1	0	0	1	0	0
2012	0	0	0	1	0	0
2013	0	0	0	1	0	0
2014	0	1	0	2	0	0

출처: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및 특별보고관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및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한편 개별 국가와 국제기구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기술협력은 유엔 내 OHCHR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주체가 반드시 OHCHR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기술협력에 대해 인권규범의 표준화 또는 제도화라는 넓은 개념에서 접근하면, 그 주체는 보다 다양해질 수 있다. <표 II-4>는 기술협력의 다양한 주체를 나타내고 있다. 기술협력의 개념은 이처럼 국제기구와 개별국가 간 상호작용 속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⁹ 또한 국가 혹은 정부 간 기구가 아닌 비정부기구 등 민간단체의 개별국가 내 역량강화 및 구축도 포함할 수 있다.¹⁰

● 표 II-4 기술협력의 다양한 주체 및 객체

기술협력 객체(예시)	기술협력 주체(예시)		
	UN	non-UN	
Cambodia China Myanmar Sri Lanka	OHCHR	IO	States
	UNICEF	OSCE International IDEA Council of Europe	UK / USA Sweden Switzerland
	WHO		
	WFP		
UNDP			

출처: 저자 작성.

⁹ 한 예로 개별국의 경제구조에 대한 재구조화(restructuring)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은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하는데, 이는 제도의 개혁 뿐 아닌, IMF가 주요임무로 여기는 경제적 사고방식 및 정보 제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IMF의 기술지원에 대한 포괄적 분석으로, Michael Barnett and Martha Finnemore, *Rules for the Worl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lob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pp. 60~63 참조.

¹⁰ 북한 내 비정부기구의 역량구축과 관련된 연구의 예시로, Geoffrey K. See and Andray Abrahamian, "Making Training More Effective for North Koreans by Separating Ideation from Capacity-Building,"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Spring 2014), pp. 25~48.

지면 제약상 기술협력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의 개념을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 정부 간 기구, 비정부기구, 개별국가 등의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되, OHCHR의 활동에 보다 중점을 두고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 등 국가들을 선정하고 이들 국가가 국제기구와의 상호작용 속에 기술협력 및 역량강화를 경험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 표 II-5 북한인권 관련 행위자 분류

다자 간 협력				양자 간 협력			
유 엔		비 유 엔		국 가		비국가행위자	
인권 기구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UPR 등) 인권조약위원회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북한 가입 기구	아세안 안보기구 (ARF)	북한인권 결의에 대한 입장	찬성 기권 반대 불참	시민 사회 단체 (CSO)	인권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평화운동 및 통일운동 단체 여성 단체 민간교류
포괄 기구	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사무총장	북한 미가입 기구	EU AIIB ADB	외교 관계 수립	수교국 겸임 (한반도클럽) 미수교국	기업	개성공단
비인권	전문기구 프로그램 기금	인권 관련 기구	Council of Europe EU	인권 당사국	한국, 일본, 중국	지방 정부	동북아 시장회의
		비인권 기구	-	6자회담 참여국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노동 조합	-
				Contact Group 국가	-	이해 관계자	스포츠 및 직능단체
				국회, 정당 사법부	IPU 비즈니스위원회		

출처: 저자 작성.

2. 기술협력 관련 이론적 논의: 인권규범의 사회화 과정과 국내적 개선

기술협력 관련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국제정치학의 구성주의 학파의 일군의 학자들의 논의를 참고하기로 한다. 1999년 발간된 *The Power of Human Rights*라는 저서에서 Thomas Risse, Stephen Ropp, Kathryn Sikkink는 국제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규범이 어떻게 전파되며, 나아가 국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범인 인권(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은 규범의 사회화 과정을 거쳐 유형화될 수 있는데, 이는 각각 1. 억압 국가의 출현과 국제 네트워크의 실행화(repression and activation of network); 2. 억압 국가에 의한 부인의 단계(denial); 3. 전술적 양보(tactical concessions); 4. 처방적 단계(prescriptive status); 5. 규범과 일치하는 행동의 단계(rule-consistent behavior)로 요약된다.¹¹ 이들의 논의는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인권규범이 전파되어 국가들의 행동에 내재되는 단계로서의 인권규범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과 국제규범의 제도화 및 사회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규범의 사회화 과정이 보여주는 바, 국제사회에 의한 주창활동과 국가 및 비정부기구들 간 협력과 조화의 과정은 보다 효과적인 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절차를 가능케 한다. 그런데 기술협력을 통한 인권개선의 가능성을 다루는 본 연구가 인권개선 전략 중 관여(engagement)

¹¹-Thomas Risse, Stephen Ropp, and Kathryn Sikkink,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19~35.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하여, 인권규범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우선적으로 국제사회에 의한 압박(pressure)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을 위한 압박의 단계에서 관여전략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인권규범의 사회화 과정은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제안에 각 국가가 다양한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기서 제시된 이론적 단계는 어느 정도 적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제규범의 전파와 국내적 변화의 과정

앞서 언급되었듯이 인권의 사회화 및 내재화 과정은 각각 1. 억압국가의 출현과 국제 네트워크의 실행화; 2. 억압국가에 의한 부인의 단계; 3. 전술적 양보; 4. 처방적 단계; 5. 규범과 일치하는 행동의 단계로 요약된다.

● 표 II-6 국제인권규범의 5단계 사회화 과정

① Repression and Activation of Network → ② Denial → ③ Tactical Concessions
→ ④ Prescriptive Status → ⑤ Rule-Consistent Behavior

출처: Thomas Risse, Stephen Ropp, and Kathryn Sikink,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19~35를 토대로 작성.

우선 억압국가의 출현과 국제 네트워크의 실행화 단계이다. 이는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국가가 국제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억압적인 정권이 존재해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시민사회 및 반대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매우 억압적인 정권의 경우 국가 내의 상황이 외부로 흘러가는 것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국가 주창 네트워크(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가 이러한 표적국가(target state)에 대해 전세계적인 주창활동을 하기에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¹²

두 번째 단계는 부인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억압국가 혹은 규범위반국가(norm-violating state)의 인권위반 혹은 인권침해 행위가 어느 정도 국제적 아젠다로 대두된 경우이다.¹³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국제적 인권 네트워크의 역할이다. 이러한 인권 네트워크는 목표국가에 대한 정보를 양상하고 전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보전파는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에 영향을 끼치고, 자국을 자유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로 여기는 서구국가들을 중심으로 표적국가의 내부적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증대하게 된다. 억압국가에 의한 부인은 바로 이러한 국제적인 비판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부인의 행위는 억압국가가 표면적으로 국제규범으로서의 인권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자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언급을 간섭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억압국가가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최소한 부인의 행위를 취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국제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원하든 원치 않든 국제적 인권 논의에 관여되었다는 점을 또한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부인의 행위를 통해 억압국가는 최소한 국제사회가 제시

¹² 위의 책, p. 22.

¹³ 이하의 내용은 위의 책, pp. 22~35 참조.

하는 인권 문제가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논리적 추론의 결과 부인이라는 자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¹⁴

세 번째 단계는 전술적 양보의 단계이다. 2단계에서 드러났듯이, 부인의 단계를 통해 억압국가는 최소한 국제공동체의 우려에 대한 자국의 초기 입장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전술적 양보의 단계에서 억압국가는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고, 군사적 혹은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등의 전략적 혹은 도구적 차원에서 약간의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게 된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판과 압박에 대응하는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대부분의 억압국가는 이러한 전술적 양보의 후과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국가 내부에 시민사회나 반대파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경우 그 사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취하는 일시적인 전술적 양보를 통해 국내적 정치역량이 결집되고, 비판적 자생능력이 회복되어, 억압국가가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던 내부적 민주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권규범의 확산과 설득과정이 초래하는 사회화 현상으로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이다. 또한 이 단계의 인권규범은 도구적 혹은 전략적이라기보다는, 논쟁적이고 심의적인 특성을 가진 실질적인 규범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국가 내부 시민사회 또한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의 핵심적 특징을 구성한다. 결국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선 인권침해국가는 스스로의 덫(self-entrapment)에 빠지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처방적 단계이다. 처방적 단계란 어느 정도 인권의

¹⁴ 같은 맥락에서 인권규범의 사회화 모델의 경우 부인의 단계가 이미 사회화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화 과정이 진행되어 국가의 말과 행동이 일정 수준에서의 일치를 이루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가 선택의정서를 포함,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는 경우, 국가 내 헌법과 국내법에 인권규범이 제도화되는 경우, 국가의 국민이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경우, 국가가 인권규범의 타당성에 대해 인정하고, 비판에 대해 대화를 지속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단계이다.¹⁵ 요약하면 이 단계의 국가는 더 이상 국내적 정당성 내지는 국제적 이미지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 내재적 차원에서 인권규범의 제도화를 통한 다양한 진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규범과 일치하는 행동의 단계이다. 처방적 단계가 인권규범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건 사실이지만, 마지막 단계인 규범 일치 단계와 동등한 경우는 아니다. 5단계가 특히 도달하기 어려운 이유는 억압국가가 어느 정도 인권규범의 제도화에 진전을 보였을 때 국내와 국외를 연결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운동성 및 국제사회의 압박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섯 번째 단계인 규범의 내재화를 통한 인권의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국가 주창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나. 북한에 대한 함의: 기술협력 논의를 중심으로

앞서 언급되었듯이 인권 분야에 있어 기술협력의 의미는 국제인권

¹⁵ 이러한 처방적 단계에서는 인권규범이 상당 수준 국가 내 제도에 포함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출현, 경찰력을 포함한 공공관리들에 대한 훈련체계 구축, 개인적 문제제기 절차의 제도화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위의 책, p. 30.

기존의 국내(제도/법)적 통합 및 역량강화로 요약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협력은 인권규범의 국가 내재적 사회화 과정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전략으로서 압박이나 혹은 관여냐는 도구적 선택의 문제일 것이며, 본질적인 부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또한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규범의 제도화를 이룩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북한의 경우, 본질적으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논의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인권규범의 제도화 관련,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자국의 인권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UPR이나 일부 조약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제사회의 인권논의에 대해 국내적 간섭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인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2단계인 부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¹⁶ 다만 때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술적 양보를 취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를 3단계 진입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¹⁷

앞서 언급된 인권규범의 5단계 사회화론을 북한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북한의 경우 사

16. 이러한 점은 특히 유엔을 위시한 국제기구의 자국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 “공화국에는 근본적으로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북한 대표부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17. 최근 북한이 한국 국적의 재미 유학생 주원문 씨를 판문점을 통해 송환(2015.10.5.)한 것이 대표적 예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논의 재개, 남북 관계 개선 등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북한이 제70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를 앞두고, 보다 유화적 제스처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여론을 결집하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Voice of America*, October 5, 2015. 2014년에도 북한은 비슷한 시기에 자국의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유엔에서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있다.

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통제된 국가이므로, 내부의 시민사회 혹은 반대파라는 설명요인을 찾아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첫째 요인과 관련하여 북한의 경우, 억압국가 및 네트워크의 실행화, 부인의 단계, 전술적 양보의 단계가 정도는 약하지만 존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일례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남북간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해 때때로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떠한 단계로 해석해야 하는가? 이는 북한인권 문제가 인권규범의 보편성과 아울러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론 적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권규범의 5단계 사회화론은 기술협력과 인권개선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합의를 다루는 본 연구에 여전히 유효하게 해석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기술협력이 국제인권기준 혹은 국제인권규범의 국가 내재적 제도화를 설명하는 핵심적 개념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특히 5단계 사회화 과정 중 4단계 과정인 처방적 단계(prescriptive status)의 경우, 기술협력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처방적 단계에서는 인권규범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는 OHCHR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구체적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이라든가 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훈련 등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협력 관련 이론적 논의를 북한의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술협력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그 한계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 국가가 제도적 차원에서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인권규범의 내재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I
II
III
IV
V

따라서 인권규범의 5단계 사회화론이 가지는 함의는 제도적 수용뿐만 아니라 규범화를 통해 한 국가의 국내외적 인권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기술협력 전략을 채택함에 있어 항상 유념해야 할 사항일 것이다.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구체적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이라든가 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훈련 등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유엔 문서에 제시된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과 기술협력 논의: COI, UPR, 조약위원회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이하에서는 북한 관련 최근의 유엔 문서를 중심으로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협력 내용과의 연관성을 논의하기로 한다. 2014년 2월 발간된 COI 보고서는 북한인권 개선 관련 국제사회의 총체적 노력의 결과로 평가할 만하다. 또한 UPR의 경우 COI 보고서와 달리 북한이 그 과정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주요 제도 중 하나이다. 이 밖에도 북한이 가입했거나 당사국인 국제인권규약 관련 위원회에서 북한에 제시한 권고사항 분석을 통해 북한에 대한 관여 전략으로서의 기술협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과 기술협력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의 주요 목적과 임무는 북한 내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북한인권침해상황이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는 COI는 보고서 말미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s)에서

각각 북한, 국제사회, 개별국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하에서는 COI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보다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북한인권 분야에서 기술협력에 대한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과 기술협력

COI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개선 관련하여 북한에 제시된 권고사항은 총 19개이다. 19개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북한의 근본적 정치적·제도적 개혁을 통한 인권개선, ②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통한 인권개선, ③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연좌제, ‘반민족’ 및 ‘반국가’ 범죄 폐지, ④ 사형제 폐지, ⑤ 독립 언론 허용, ⑥ 선전선동 폐지 및 인권 교육 도입, ⑦ 종교의 자유 보장, ⑧ 공민등록자로 열람을 통한 감시제 폐지, ⑨ 양성평등 보장, ⑩ 시장 활동을 포함한 차별 없는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 등이다. 또한 ⑪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굶주림 극복, ⑫ 인도적 지원 확보, ⑬ 여행 및 이동 자유 확보, ⑭ 납북자 문제 해결, ⑮ 이산가족 문제 해결, ⑯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반인도범죄자를 처단하고, 과도기 정의에 관한 국제 지원 확보, ⑰ 이 보고서 및 유엔에서 지적한 모든 인권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⑱ 강제실종협약을 포함한 주요 협약 비준, ⑲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현장사무소 및 OHCHR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수용이 언급되었다.¹⁸

COI의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상당수 권고사항이 북한체제 자체(state level)의 법적·제도적 개혁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권고사항 1의 경우는 북

¹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자료집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24~28.

한체제 자체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대표적 권고이다. 구체적으로 인권개선을 위한 정치적, 제도적 개혁을 언급하고 있다. 권고사항 2인 정치범수용소 해체의 경우도 북한 내 관리소의 존재가 전체주의 국가로서 북한을 지탱하는 핵심기제라는 관점에서 체제존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에 반하는 핵심범죄 관련 사항(권고사항 3), 감시제 폐지(권고사항 8) 또한 통제국가로 볼 수 있는 북한의 체제존립과 직결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북한체제 자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개혁의제를 제시한 권고사항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권고사항은 체제 내(within the regime) 개선 가능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형제 폐지(권고사항 4)의 경우 북한 내 사형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공개처형이 현저히 줄어들고 비밀 처형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증언에서 확인되었듯이 국제사회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¹⁹ 독립 언론 허용(권고사항 5), 선전선동 폐지 및 인권교육 도입(권고사항 6), 종교의 자유 보장(권고사항 7) 등도 체제 내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다. 체제 내 권고사항의 경우 국제사회와 북한 간 상호작용을 통해 충분히 논의 가능한 의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에 대한 COI의 권고사항은 북한과 국제사회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 확보(권고사항 12), 과도기 정의 관련 사항(권고사항 16), 주요 협약 비준(권고사항 18), OHCHR의 기술지원 수용(권고사항 19)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COI 보고서에서 북한과 OHCHR 간 기술지원 논의가 포함된 점은 향후 국제사회가 COI 보고서가 강조해 온 ‘책임성 규명’과 아울러 북한

¹⁹ 물론 공개처형의 감소가 곧 북한 내 사형제 폐지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북한이 사형제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결과, 체제 자체의 개혁보다는 체제 내 제도적 변화를 통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인권 개선을 위한 관여 논의를 지속해야 할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술협력 혹은 기술지원에 대한 사안은 OHCHR의 현장에 기반한 조직을 수용하고, 북한에 대한 여러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유엔의 다양한 기구들을 활용해야 할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다.²⁰

현재 북한은 COI의 권고사항은 차치하고, COI 존재 자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며, 인권의 정치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인권개선 전략으로서의 기술협력에 대한 논의를 COI 보고서를 활용하여 접근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효율적 인권개선 전략으로서 기술협력 논의를 채택한다면 COI 보고서를 굳이 언급하지 않고도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술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2)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사항과 기술협력

COI는 국제사회 및 유엔에 대해 총 10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① 북한인권 상황의 안보리 회부, ② 국가별 특별절차 확장, ③ 책임성 규명을 위한 현장기반 조직(field-based structure) 설치, ④ 기술지원 강화 및 납치, 강제실종 문제 제기, ⑤ 권고사항 이행에 대해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⑥ 보고서의 결론 및 권고사항에 대한 국제사회의

²⁰-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s) Accept immediately a field-based presence and technical assistance from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other relevant United Nations entities to help to implement the above-mentioned recommendations.”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7 February 2014), p. 369.

행동 촉구, ⑦ 인권우선전략(Rights up Front Strategy) 채택, ⑧ 인권접촉그룹(human rights contact group) 형성, ⑨ 인도적 지원의 균등성(non-discrimination) 확보, ⑩ 고위급 정치협의체를 통한 평화체제 형성 등이다.²¹

COI 보고서의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사항의 특징은 한마디로 국제협력에 기반한 북한인권 개선전략이다. 유엔 COI는 권고사항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와 압박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제사회 및 유엔과 관련된 권고사항에서 기술협력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관여전략의 핵심으로 언급되고 있다.²² COI는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사항에서 유엔 안보리가 책임성 규명을 위해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통해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을 언급하였다.

국제사회에 대한 COI의 권고사항은 관여와 압박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현장기반 조직, 기술지원 강화, 인권우선전략 등 주요 이행전략이 소개되고 있다. 2015년 6월 23일, 서울에 설치된 OHCHR의 북한인권사무소는 책임성 규명을 위해 북한인권 침해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함과 아울러,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기술지

²¹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자료집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pp. 30~32.

²²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d) The High Commissioner should continue the engagement of OHCHR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ffering technical assistance and enhancing advocacy initiatives. The High Commissioner should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a strategy led by the Special Rapporteur and involving all concerned human rights mechanism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to address, coherently and without delay, the special issue of international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and related matters described in the present report. Member States should afford full cooperation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strategy.” *UN COI Report*, pp. 370~371.

원 분야 논의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총체적 노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²³ 북한인권사무소의 설치와 역할은 북한의 현재 입장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이 보다 구체화되고 가시화될 수 있다는 대내외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관계에 대한 권고사항과 기술협력

COI 권고사항에서 기술협력 혹은 기술지원이란 용어는 두 번 인용되었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연관된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남북 간 관계개선과 관련하여 COI 보고서는 다양한 스포츠 및 학술교류, 북한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 학생교류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가들과 시민사회들이 문화, 과학, 스포츠, 경제발전 분야에서 인적교류(people-to-people dialogue and contact)를 강화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²⁴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남북한 간 인적교류 확대를 촉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권고사항과 기술협력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 북한이 수용한 권고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북한과의 기술협력 혹은 인권대화 논의의 주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북한의

²³- Signe Poulsen, “UN 북한인권사무소 북한인권 논의 동향,” (방원 간담회, 2015. 9. 7.).

²⁴-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자료집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pp. 19~20.

제1차 UPR은 2009년 11월 30일에서 12월 11일 사이에 수행되었고, 북한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²⁵ 제2차 UPR은 2014년 4월 24일에서 5월 9일 사이에 수행되었고, 북한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²⁶

북한은 지난 2009년 진행된 제1차 UPR에서 총 167개의 권고안 중 81개의 권고안을 최종 수용하였다. 또한 북한은 최종적으로 65개의 권고안을 거부하였다.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이렇게 북한이 수용한 권고안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선제적 방식으로 북한 당국과 대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2009년 제1차 UPR을 중심으로 북한이 받아들인 권고안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북한은 인권의 영역에서 국제사회와 건설적 협력(constructive cooperation)을 추구하며, 인권 관련 논의가 상호적대적이지 않고 정치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관계 측면과 국제사회와 소통의 측면에서 인권논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외부로부터의 인권 논의가 북한 당국을 인정하고, 협조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기보다 정치화되고 대결적인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 혹은 인권논의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보다 협조적이고 건설적인 차원의 인권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노력에 있어 핵심적 과제 중 하나이다.

둘째,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인권논의가 자국의 국가역량(national capacities)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다는 전제하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²⁵- UN Doc. A/HRC/WG.6/6/PRK/1 (27 August 2009).

²⁶- UN Doc. A/HRC/WG.6/19/PRK/1 (30 January 2014).

북한의 입장은 인권문제의 과도한 정치화에는 반대하면서도 인도주의적 협력 중심의 사회권적 측면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관여를 요청한다는 양면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향후 한국 정부가 남북 간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북한 내 역량구축이라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2014년 제2차 UPR의 경우, 북한은 총 268개의 권고안 중 113개의 권고안을 수용하였다. 북한이 수용한 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새로운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법률 강화 및 집행,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관계 강화, 양성평등 권리 강화, 사법부 독립성 강화, 종교·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보장, 식량권 보장, 농촌 개발, 공민위생보건 서비스 강화, 교육의 질 제고,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 경제발전 촉진 등이다.

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사항과 북한과의 기술협력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의 국가보고서에 대해 다음 23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①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② 국내법과 규약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보고, ③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④ 국제인권단체 및 국제기구들에 대해 접근권 부여, ⑤ 영아 사망률 감소와 영양실조 해결을 위한 조치, ⑥ 규약과의 일치를 위한 형법 개정, ⑦ 형법 제10조의 폐지, ⑧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과 가혹행위 사례 조사, ⑨ 구금시설 개선, ⑩ 규약과의 일치를 위한 노동법 개정, ⑪ 재판 전 구금 사례와 원인에 관한 분석 자료 제출, ⑫ 여행증명서 요구 금지, ⑬ 출국 비자(exit visa) 요구 금지, ⑭ 외국인 추방 시 보호조치

I
II
III
IV
V

마련, ⑮ 종교 활동의 자유 및 종교의식 행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실태 보고, ⑯ 출판 금지 사유 명시 및 외국 신문에 대한 접근권 보장, ⑰ 집회의 자유 실태 보고, ⑱ 일반논평(General Comment) 25 참조, ⑲ 추가 조사 요구 및 발견 사항 보고 요청, ⑳ 여성의 사회 진출 현황 및 지위와 보수 수준에 관한 자료 제공, ㉑ 정기 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㉒ 당국의 조치를 비롯해 권고사항 이행 예정에 관한 자료 제출, ㉓ 기타 권고사항과 규약 관련 정보들을 세 번째 정기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²⁷

위에서 드러나듯이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서 기술협력에 대한 논의가 명시적으로 기술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을 차례로 분석해 보면, 기술협력 논의가 핵심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법부 독립 권고, 국가인권기구 설립 권고, 형법 및 노동법 개정 등의 논의는 직간접적으로 국제기준의 국내적 적용을 강조하는 기술협력 논의와 일치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자유권 분야에 있어 세부적 사항을 권고해 온 바, 향후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사항과 북한과의 기술협력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북한의 국가보고서에 대해 다음 24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① 규약 이행을 위한 노력, ② 규약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지속, ③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보장, ④ 규약의 북한 국내법으로의 편입 사례, ⑤ 고소, 진정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적용 사례,

²⁷- UN Doc. CCPR/CO/72/PRK (27 August 2001), pp. 2~7.

⑥ 인종차별금지규약 비준 권고, ⑦ 국제노동기구 가입 권고, ⑧ 여성 차별금지 원칙의 준수와 여권 신장에 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시행, ⑨ 능력개발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⑩ 일자리 혹은 생활 여건으로 탈북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중지, ⑪ 노동조합에 관한 규약과 국내법의 일치, ⑫ 연금을 포함하는 사회안전망에 관한 정보 제출, ⑬ 빈곤층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과 특히 여성의 일자리에 관한 실태 보고, ⑭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⑮ 자연재해로 인한 아동의 교육권 침해 방지, ⑯ 고아의 교육권과 가족권, ⑰ 취약계층의 식량권 보장, ⑱ 아동의 영양실조 문제 해결과 건강 관리, ⑲ 산모에 대한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⑳ HIV/AIDS 예방 전략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 ㉑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 ㉒ 위원회의 대표단 방문 전제조건, ㉓ 규약에 따른 의무 이행 및 시민사회의 성장 장려, ㉔ 세 번째 정기 보고서 제출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다.²⁸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서도 역시 명시적으로 기술협력에 대한 논의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국제사회가 북한이 가입한 국제규약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의 국내적 이행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사회권위원회 권고사항의 경우,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또한 국제사회에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자국의 인권 개선 노력으로 제시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과의 기술협력 논의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접근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술협력을 위한 환경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단계적으로 사안별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²⁸- UN Doc. E/C.12/1/Add.95 (12 December 2003), pp. 4~6.

²⁹- 물론 단계적 접근법이 북한 당국이 받아들일 만한 이슈만을 중심으로 접근하자는

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과 북한과의 기술협력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의 국가보고서에 대해 다음 25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① 협약 유보 철회 요청, ② 협약과 국내법 충돌 시 협약의 지위에 관한 보고, ③ 북한 국내법에 차별의 정의 추가, ④ 1946년 7월의 성평등법 개정, ⑤ 여성 차별 규정과 협약의 규정의 일치를 위한 법 개정, ⑥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에서의 여성의 지위 보장, ⑦ 차별 실태 및 차별 금지를 위한 조치 이행에 대한 보고, ⑧ 여성의 발전을 위한 에너지와 자원을 국가제도(national machinery)에 제공할 것을 보장할 것, ⑨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보장과 종합적인 계획의 발전과 이행, ⑩ 북한 내 여성의 실질적 평등 지표와 정보 수집 체계 수립, ⑪ 여성과 남성의 고정된 성역할과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⑫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관한 연구와 분석 보고, ⑬ 이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보고 및 개선 프로그램 시행, ⑭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빈곤자 부양 정책 시행, ⑮ 의사결정 지위에서의 여성 역할 확대, ⑯ 출산(reproductive)에 관한 의료 서비스 이용과 접근 실태 보고, ⑰ HIV/AIDS에 관한 실태 보고 및 감염자에 대한 차별 금지, ⑱ 구금시설 내 여성 실태 보고, ⑲ 여성 인권 기구의 설립, ⑳ 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 ㉑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을 협약의 의무 이행에 적극 활용할 것, ㉒ 협약의 이행은 새천년개발계획(MDGs) 성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 ㉓ 주요 국제인권조약 준수를 통한 여성의 자유와 권리 보장, ㉔ 북한 여성들의 평등권 보장을 위해 권고사항이 북한 내부에서 전파될 것을 요청, ㉕

뜻은 아니다. 오히려 전략적인 큰 틀은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선제적으로 주요 이슈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과 조치를 요청하는 등 25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³⁰

북한은 2001년 2월 27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보면, 협약에 따른 법 개정, 인권계획 수립 및 실행, 여성인권기구 설립 등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북한 간 다양한 기술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 상대적으로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인권개선에 대한 자국의 노력을 강조해 왔다는 측면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기술협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 유엔 아동권위원회 권고사항과 북한과의 기술협력

유엔 아동권위원회는 북한의 국가보고서에 대해 다음 42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후속조치 실행, ② 협약과 국내법의 일치, ③ 아동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 확보와 감시 체계 마련, ④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 제공, ⑤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환경 제공, ⑥ 협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아동 권리 이행을 위한 예산에 우선순위를 둘 것, ⑦ 협약의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수집 체계의 발전, ⑧ 협약 제2조 차별금지의 원칙을 보장, ⑨ 아동 정책과 법률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 ⑩ 아동의 생명권, 성장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⑪ 아동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관점을 가지고 참여를 독려할 것, ⑫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행, ⑬ 아동의 사상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³⁰- UN Doc. CEDAW/C/PRK/CO/1 (22 July 2005), pp.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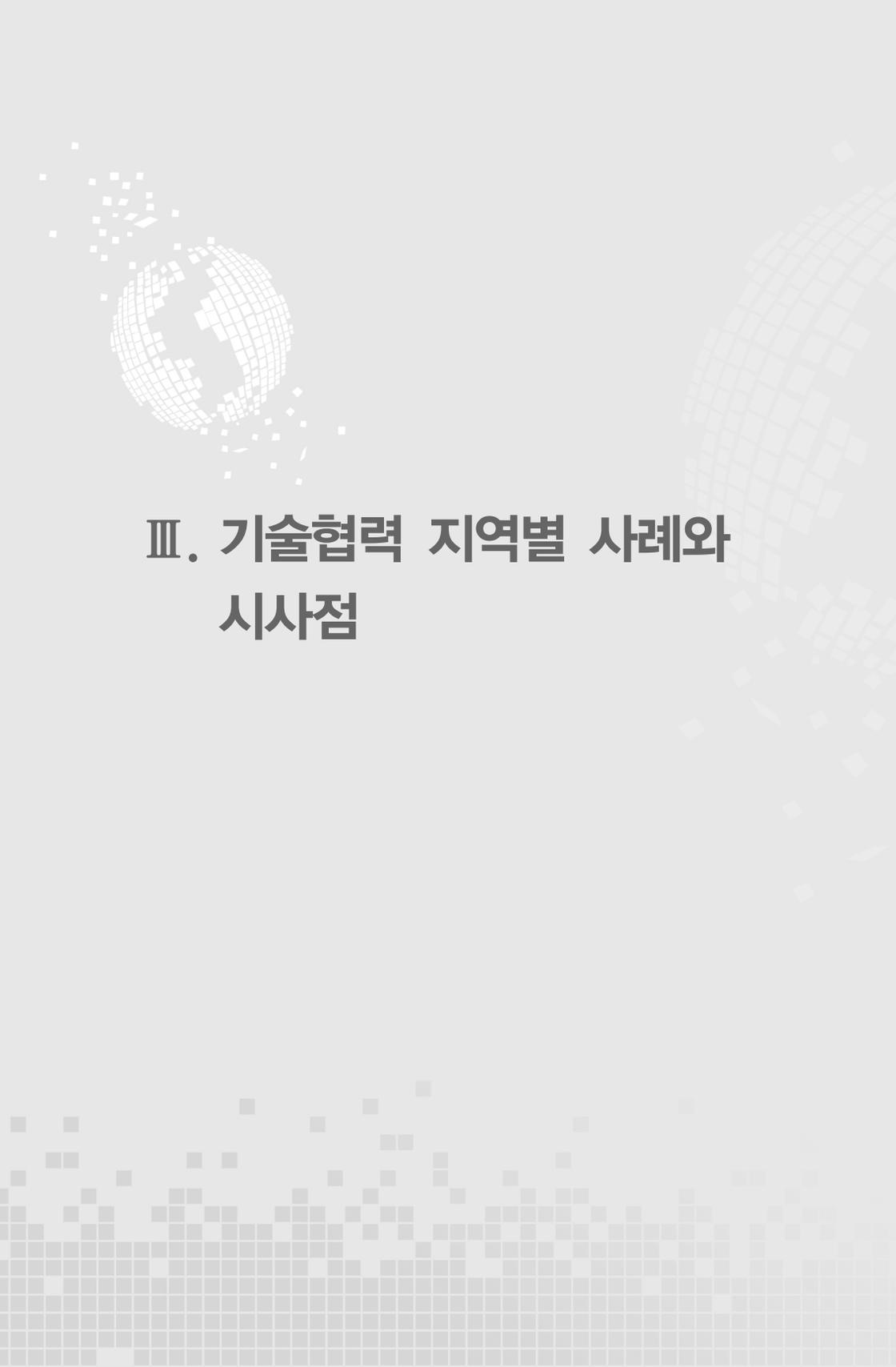
를 존중할 것, ⑭ 아동의 고문을 방지하는 국내법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할 것, ⑮ 아동에 대한 어떤 형태의 폭력도 금지, ⑯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아동 시설 강화, ⑰ 아동의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 ⑱ 국내 및 해외 입양에 관한 법 제정에 관한 검토 필요, ⑲ 아동 학대와 유기 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에 착수할 것, ⑳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 통계 자료 수집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㉑ 아동의 높은 영양실조 비율과 모자보건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 전파 조치의 이행, ㉒ 청소년, 특히 여자 청소년의 건강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에 착수할 것, ㉓ 청소년의 성교육 강화 및 비공개 상담 진행, ㉔ 아동의 정서 안정을 위한 지원 보장, ㉕ 위생과 수질 개선을 비롯한 아동의 식량 가용성 증대 노력, ㉖ 전반적인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 체계와 교사 교육 시행, ㉗ 무허가 국외 이동으로 인한 18세 미만 주민 처벌 금지, ㉘ 평화적인 협상을 통한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 ㉙ 아동 노동 착취 금지 조치 이행, ㉚ 아동에 의한 금지약물 판매, 사용, 밀매 금지법 강화 및 약물로 인한 피해 아동 보호 절차 제공, ㉛ 꽃제비 아동(street children)의 취약성에 대한 대책과 연구를 진행할 것, ㉜ 아동에 대한 성의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할 것, ㉝ 인신매매 피해 아동 보호 및 치료와 사회 복귀 프로그램 제공, ㉞ 인권 보호에 있어 당국의 조치가 권고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제공할 것, ㉟ 전국적인 사법기관의 설립과 법관 교육, ㊱ 유엔 및 UNICEF를 통한 청소년 사법 영역의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수락, ㊲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무력분쟁 시 아동 연구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 ㊳ 중요한 국제 인권 보호조치의 비준 및 전반적인 인권 증진을 위한 권고사항의 이행, ㊴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 이행, ㊵ 권고사항은 시민사회단체,

아동 및 청소년 등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④ 다섯 번째 정기 보고서 제출, ⑤ 일반 핵심문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보완한 핵심 문서의 제출 등을 권고한 바 있다.³¹

북한은 국제인권조약 중 특별히 아동권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보여 왔다. 1990년 9월 21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데 이어, 2014년 11월 10일에는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북한 당국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여성 및 아동 문제를 통해 자국의 인권개선 노력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위원회의 권고사항에는 청소년 사법 영역에 있어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일치를 명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한편 아동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여타 규약위원회의 권고사항보다 배 가까이 많다는 측면에서 이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차원의 북한과의 기술협력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³¹- UN Doc. CRC/C/PRK/CO/4 (27 March 2009), pp. 2~18.



Ⅲ. 기술협력 지역별 사례와 시사점

1. 기술협력 지역별 사례

가. 캄보디아

(1) 배경

캄보디아는 오랜 기간의 내전으로 교육·보건·사회보호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조의 붕괴를 경험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냉전 체제가 완화 및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캄보디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1990년 9월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포괄적 캄보디아 평화안을 채택하였다.³² 그리고 1991년 10월 23일 파리평화협정(Paris Peace Accords)이 체결되었고, 1992년 2월부터 유엔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United Nations Transnational Authority of Cambodia: UNTAC)가 평화유지활동을 시작하였다. 유엔 총회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캄보디아인권결의를 채택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캄보디아인권결의를 채택하였고, 2004년과 2005년에는 이를 캄보디아기술협력결의로 대체하였다.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를 승계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2013년과 2015년에 캄보디아기술협력결의를 채택하였다.

한편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³³로서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유엔 사무총장에 대하여 특별대표를 임명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³⁴

³²- UN Doc. S/RES/668 (1990).

³³- ‘특별절차’는 인권이사회(구 인권위원회 포함)로부터 수입을 받은 독립된 인권전문가(특별보고관, 사무총장 특별대표, 독립전문가 등) 또는 전문가그룹(보통 5명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주제별 또는 특정 국가의 인권에 관해 보고하고 조언하는 제도이다.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가 임명되었다.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받았다.

첫째, 캄보디아 정부 및 주민과의 접촉 유지

둘째, 캄보디아 내 유엔 인권 현장활동에 대한 가이드 및 조정

셋째, 인권 증진 및 보호에 있어서 캄보디아 정부 지원

넷째, “인권 현장에서 조언제공(Advisory servic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이란 아젠다로 총회 및 인권위원회에 보고

첫 번째 사무총장 특별대표로는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가 임명되었고, 마이클 커비는 1994년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였다.³⁵ 이 보고서에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측면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측면, 그리고 취약계층의 권리의 측면에서 캄보디아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캄보디아에 설치된 유엔 인권센터(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Rights) 현장사무소에 의한 기술협력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를 승계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의 임명을 통하여 특별절차의 임무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³⁶ 이후 캄보디아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는 매년 연장되어, 2015년 현재 로나 스미스(Rhona Smith) 특별보고관이 활동하고 있다.

³⁴- UN Doc. E/CN.4/RES/1993/6 (19 February 1993).

³⁵- UN Doc. E/CN.4/1994/73 (24 February 1994).

³⁶- UN Doc. A/HRC/RES/9/15 (18 September 2008).

(2) 내용

(가) 유엔과의 기술협력

캄보디아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1993년 2월 19일 채택된 인권위원회 결의 1993/6은 사무총장에게 UNTAC의 임무 종료 이후에도 특히 유엔 인권센터의 현장가동을 통하여 유엔이 지속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모니터링, 보호 및 공공보고 기능과 기술지원 및 자문제공이 결합된 임무를 부여하였다.³⁷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및 기술 지원의 이행 관리, 자문서비스 프로그램의 관리
둘째, 선거 이후 구성될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할 경우 캄보디아가 가입한 인권조약상의 의무 이행 지원(해당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준비 포함)

셋째, 캄보디아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 제공

넷째,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창설 및/또는 강화에 기여

다섯째,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법령 입안 및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

여섯째, 사법행정예 책임 있는 인력에 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
이후 1993년 10월 유엔 인권센터는 프놈펜에 캄보디아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 사무소를 포함한 유엔 인권센터는 1998년 OHCHR과 공식적으로 통합되었다. 캄보디아 국가사무소는 OHCHR의 가장 오래된 현장사무소이다.

OHCHR 국가사무소들은 OHCHR과 수용정부(host government)

³⁷- UN Doc. E/CN.4/RES/1993/6 (19 February 1993).

간 표준협정을 토대로 설치된다. 인권관찰, 보호, 기술협력활동, 공공 보고 등이 국가사무소의 임무이다. 국가사무소의 활동은 인권 사항에 대한 평가, 인권 작업과 관련되는 국내적·국제적 행위자들의 역량, OHCHR이 이용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에 기초하여 해당 정부와 협의하여 진행된다. 국가사무소들은 매년 인권최고대표에게 보고하며, 이 보고서들은 임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또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의 일부로서 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현재 13개국(기니, 토고, 우간다, 모리타니, 팔레스타인점령지역, 튀니지, 예멘, 캄보디아, 코소보, 볼리비아, 콜롬비아, 과테말라, 멕시코)에 OHCHR 국가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OHCHR 캄보디아 사무소는 인권최고대표의 인권의 보호 및 증진 임무를 이행하며, 캄보디아 평화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사법 및 입법 기관, 시민사회, 기타 국내적·국제적 행위자들과 협력한다. 1993년 이후에는 다음의 분야에서 법치를 촉진하고 인권기준의 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첫째, 캄보디아 헌법에 새겨진 국제인권기준과 부합되게 인권의 행사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틀이 마련되도록 지원하는 것

둘째, 법의 이행과 권리 존중에 책임 있는 국가기관들의 조치를 감독하고, 시정조치를 위하여 정부 및 다른 관련 행위자들에게 문제 있는 분야를 알리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

셋째, 정부가 인권이사회 및 그 메커니즘과 협력하도록 지원하고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을 촉진하는 것

넷째, 인권을 모니터하고 옹호하는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역량을 지원하고, 정부와의 상호 존중 분위기 형성, 대화 및 협력을 통하여 이들의 활동을 보호하는 것

1994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총회, 구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는 유엔 인권센터와 그 이후의 OHCHR 캄보디아 사무소의 역할 및 성과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채택해 왔다. 이러한 보고서들을 통해서 확인된 그동안의 주요 기술협력 활동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III-1 OHCHR 캄보디아 국가사무소의 주요 기술협력 활동³⁸

연도	주요 기술협력 활동
1994년~2000년 (유엔 인권센터가 1998년 OHCHR과 통합되기 전 유엔 인권센터의 활동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치안위원회, 언론, 이민, 여성, 장애인, 교도소, 인신매매, 국적, 결사, 형사 및 형사소송, 선거, 부패방지, 정당, 노동 등의 분야에서 법령 입안 지원 ▪ 국가기관 발전 및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인권보호 및 민원접수 분과위원회에 대한 자문 제공 및 지원 - 의회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세미나 개최 - 조약 이행감독위원회 보고 담당 기관에 재정적 원조 제공 ▪ 사법행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도소 개선 - 경찰관 대상 인권교육 - 판검사 대상 인권법 교육 - 사법 멘토 프로그램 실시 - 캄보디아법 법전화 작업 ▪ 국제조약의 국내법화 지원 ▪ 유엔 조약기구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 지원 ▪ 학교에서 사용될 인권 관련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개발 지원 ▪ NGO 및 시민사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 제공 - 인권 관련 워크숍 개최

I
II
III
IV
V

연도	주요 기술협력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공무원 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 자금 지원 ▪ 지역사무소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차원에서 인권 활동을 강화하고 캄보디아 전 지역에 걸쳐 프로그램의 통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 설치 ▪ 캄보디아에 대한 유엔의 개발 지원 계획안 작성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인권, 법치, 빈곤 감소, 인적 개발,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분야
2001년~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촉진 및 보호를 위한 법령 입안 및 이행 지원 ▪ 인권 촉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 창설 및 기타 정부기구 강화 ▪ 사법행정 및 기타 인권 문제에 있어서 정부 공무원 역량 구축 및 훈련 ▪ 유엔 조약기구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 지원, 유엔 조약기구의 권고 이행 지원 ▪ 캄보디아 내 인권 관련 NGO 지원 ▪ 교육 및 기술지원, 자문 제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법에 관한 대학강좌 지원 - 노동권 및 인신매매에 관한 교육과정 제공 - 주요 국제인권문서 번역, 인권 관련 서적 및 자료 배포 - 법원에 법적 문제 및 공정한 재판절차에 관한 자문 제공
2004년~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치 및 사법부문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부 및 사법행정 개선 지원 - 인권 촉진 및 보호를 위한 법령 입안 및 이행 지원 ▪ 유엔 조약기구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 지원, 유엔 조약기구의 권고 이행 지원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관련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권 TF 설치 지원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교육과정 제공

연도	주요 기술협력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내 인권 관련 NGO 지원 ▪ 국가인권기관 설립 논의 지원
2009년~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도소 개선 지원 프로그램 ▪ 법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한 조약의 의무 이행 지원, 새로운 조약의 비준 촉구 - 국가인권기관 설치 지원 등 기관 구축 지원 - 국가 공무원에 의한 법적 기준·절차 준수 촉진 ▪ 토지 및 주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국내 법령 체계 강화와 이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이행 지원 ▪ 시민사회와 기본적 자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시민사회조직 간 상호존중 및 대화를 촉진하고 공적 업무에 주민들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조직과 개인의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행사 역량강화 지원 ▪ 유엔 조약기구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 지원 ▪ 인권 관련 교육, 훈련, 정보 제공

³⁸_ UN Doc. A/49/635/Add.1 (3 November 1994); UN Doc. A/50/681/Add.1 (26 October 1995); UN Doc. E/CN.4/1996/92 (2 February 1996); UN Doc. E/CN.4/1997/84 (31 January 1997); UN Doc. E/CN.4/1998/94 (11 February 1998); UN Doc. E/CN.4/1999/100 (3 February 1999); UN Doc. E/CN.4/2000/108 (14 January 2000); UN Doc. E/CN.4/2001/102 (9 January 2001); UN Doc. A/56/230 (31 July 2001); UN Doc. A/57/277 (6 August 2002); UN Doc. E/CN.4/2003/113 (9 January 2003); UN Doc. E/CN.4/2005/111 (23 December 2004); UN Doc. E/CN.4/2006/105 (24 January 2006); UN Doc. A/HRC/4/95 (18 January 2007); UN Doc. A/HRC/7/56 (11 February 2008); UN Doc. A/HRC/12/41 (5 August 2009); UN Doc. A/HRC/15/47 (16 September 2010); UN Doc. A/HRC/18/47 (21 September 2011); UN Doc. A/HRC/24/32 (19 September 2013); UN Doc. A/HRC/27/43 (15 August 2014).



유엔 인권센터와 그 이후의 OHCHR 캄보디아 사무소의 기술협력 관련 주요 활동을 보면, 카테고리 분류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인권 관련 법령 입안 및 이행 지원, 조약 이행 지원,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훈련 실시 등의 기술협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활동 초기에는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기관 및 정부기구를 정비하고 사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면, 보다 최근에는 토지권 및 주거권, 결사·집회·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 및 촉진, 교도소 개선 지원과 같이 개별적인 권리나 구체적인 사안 중심으로 기술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하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협력 프로그램 중 교도소 개선 지원 프로그램, 법치 프로그램, 토지 및 주거 프로그램,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유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교도소 개선 지원 프로그램³⁹

캄보디아의 교도소 체계는 자원, 역량, 직원교육 등의 부족으로 인해 수감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OHCHR 캄보디아 사무소는 캄보디아 내무부의 일반교도소담당부서(General Prisons Department)와 협력하여 교도소 개선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은 자문, 전문적인 훈련, 식수 및 위생 환경 개선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교도소 방문평가를 바탕으로 일반교도소 담당부서와 내무부에 비공개로 보고하는데, 이러한 보고는 교도소별

³⁹ 관련 정보는 OHCHR, "Prison Reform Support Programme," <<http://cambodia.ohchr.org/EN/PagesFiles/PrisonIndex.htm>>. (검색일: 2015.9.3.).

구금 환경과 수감자 대우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한편, 긍정적 측면, 우려 사항, 개선을 위한 권고를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다음의 네 가지 권고사항이 수락되어 이행 과정에 있다: 수감자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을 미화 0.37달러에서 미화 0.70달러로 증대시킬 것; 수감자 위원회를 검토할 것; 교도소 내 부패 문제를 다룰 것; 교도소 건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확립할 것. OHCHR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관 정부기관과 함께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건설적 협력정신의 예로 간주한다.

② 법치 프로그램⁴⁰

법치 프로그램은 캄보디아 내 법치 확립을 통하여 인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조약 비준 및 법체계, 기관 구축, 국제규범 및 절차 준수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각 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조약 비준 및 법체계 프로젝트는 캄보디아에서 인권 보호 관련 법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효과적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캄보디아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서명하였다. 현행 캄보디아 헌법은

⁴⁰ 관련 정보는 OHCHR, “Rule for Law Programme,” <<http://cambodia.ohchr.org/EN/PagesFiles/RuleOfLawIndex.htm>>. (검색일: 2015.9.3.).

제31조에서 “�보디아 왕국은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인권과 여성 및 아동의 권리 관련 규약 및 협약에 규정된 인권을 인식하고 존중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기 조약들을 헌법에 따라 보장하고 있다. 2007년에는 캄보디아 헌법위원회가 인권 조약은 캄보디아 국내법의 일부를 구성하며 법원에서 판사들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기관 구축 프로젝트는 캄보디아에서 인권의 보호 및 촉진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의 국가기관(사법부, 최고사법위원회, 헌법위원회 등)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기관의 창설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한 것이다. OHCHR은 캄보디아의 법 및 사법 분야 개선의 틀 내에서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인권 관련 국가기관들을 강화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 및 다른 기부자들과 함께 ‘법 및 사법 분야 개선에 대한 기술위킹그룹(Technical Working Group on Legal and Judicial Reform)’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는 많은 수의 새로운 기관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예컨대 2006년에는 삼택 훈 센(Samdech Hun Sen) 캄보디아 총리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 법안에 대한 기안 작업이 NGO들로 구성된 위킹그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에는 캄보디아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국가예방기구를 설치할 것이 요구되었고, 현재 내무부를 중심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OHCHR은 이러한 기관들의 설립 과정에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규범 및 절차 준수 프로젝트는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국제기준의 법적 틀 내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에서 형사소송법의 이행에 대한 모니

터링,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모니터링, 과도한 구금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다.

법치 프로그램은 근본 원인과 관심 사안을 확인하고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건설적 대화의 정신에 따라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도소 개선 지원 프로그램과 긴밀히 협력한다. 또한 사법 행정에서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특별재판소에 의해 발전된 선례를 활용한다. 캄보디아 특별재판소는 유엔 및 캄보디아 정부가 민주 캄푸치아(Democratic Kampuchea) 시기(1975. 4. 17.~1979. 1. 6.)에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잔혹행위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와 지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함께 설립한 것으로 국내외 판사 및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캄보디아 특별재판소의 1차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2차 목적은 특별재판소가 캄보디아 국내재판소들의 롤모델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캄보디아 특별재판소는 언론인 및 시민사회로부터의 검증에 개방되어 있는 재판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재판을 진행하며 모든 피고인을 위한 강력하고 신뢰할만한 방어수단을 증대시키고 피해자의 소송 참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캄보디아에서 사법행정에 대한 기대를 증대시키고 사법절차에서의 투명성 및 책임규명을 보다 촉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이런 점에서 캄보디아 특별재판소는 캄보디아에서 법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OHCHR 캄보디아 사무소는 캄보디아 특별재판소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 영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유산(legacy)’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③ 토지 및 주거 프로그램⁴¹

OHCHR 캄보디아 사무소는 캄보디아에서 토지 및 주거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캄보디아에서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토지 분쟁, 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토지수탈, 주로 농공산업 목적 하의 경제적 토지 양허(economic land concessions), 채광과 가스·석유 추출, 기반시설 구축, 급속한 도시 개발 등을 배경으로 한다. 토지 및 주거 프로그램하에서 OHCHR 캄보디아 사무소는 토지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국내 법령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 시민사회조직, 민간기업, 지역공동체, 유엔 기관, 다자적·양자적 개발 행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와 적절한 주거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상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 등을 다루는 일련의 국제적 기준들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강제퇴거 방지 및 적절한 주거권 촉진; 재정착 및 재이주 모니터링; 현행 법령과 입법 중인 법령이 토지권 및 주거권을 규율하는 인권규범과 부합되는지 여부 분석; 토착민들의 토지 등록과 집단적 토지 권원 신청 지원; 토지수탈 및 분쟁해결과정 모니터링과 대화 촉진; 책임 있는 기업 관행 촉진 및 인권침해 구제.

특히 OHCHR 캄보디아 사무소는 캄보디아 토착민들(indigenous peoples)의 권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토착민 공동체, 당국, 기업 간의 지속적이고 해결되지 않은 분쟁을 모니터링하였고, 대화 촉

⁴¹- 관련 정보는 OHCHR, "Land and Housing Rights Programme," <<http://cambodia.ohchr.org/EN/PagesFiles/LandLivelihoodIndex.htm>>. (검색일: 2015.9.4.); UN Doc. A/HRC/28/42(19 January 2015), paras. 39~41.

진, 법원 모니터링, 법적·절차적 조언 제공 등을 수행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는 11개 토착민 공동체에 대하여 그들의 법적 실체로서의 등록을 지원하고 집단적 토지 권원 신청을 지원함으로써 토착민 공동체가 토지 및 주거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보다 잘 방어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 보호 체계에서 토착민 공동체들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토착민들이 지식 및 이해 제고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권 및 주거권에 대한 간행물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책을 발간하고, 시민사회조직을 대상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모니터링과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행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캄보디아 토착민들의 토지권 및 주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안 마련 시 협의절차에 토착민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기준과 부합되는 법령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었다.

④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유산 지원 프로그램⁴²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HCHR 캄보디아 사무소는 혼합법정(hybrid tribunal)이 종료된 이후에도 혼합법정의 법치 강화에 대한 영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유산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교육적 측면(훈련

⁴² 관련 정보는 OHCHR, “International Justice and Human Rights: Supporting the Legacy of Cambodia’s Extraordinary Chambers,” <http://cambodia.ohchr.org/EN/PagesFiles/ECCC_legacy_program.htm>. (검색일: 2015.9.5.); UN Doc. A/HRC/27/41 (24 July 2014), paras. 58~61.

수행, 지침 마련 등)과 실제 속의 법(law in action)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측면(캄보디아 특별재판소 판례 또는 실행을 사용한 국내 시스템의 시범케이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OHCHR 캄보디아 사무소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및 다른 혼합법정에서의 ‘유산’ 활동에 대한 정보 및 인식 제고

둘째, 캄보디아의 법 및 사법 분야에서 캄보디아 특별재판소에 관한 지속적인 대화·논의·토론 촉진

셋째, 특별재판소가 국내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재판소의 판례 및 실행을 법 전문가 및 학자들에 널리 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및 커리큘럼의 도입 촉진

이러한 목적 하에 OHCHR 캄보디아 사무소가 실제로 수행한 기술협력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OHCHR 캄보디아 사무소는 2012년부터 특별재판소 직원들이 지역 내 동료 판검사 및 변호사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좌담회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캄보디아 법무부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특히 재판전 구금 문제는 매 회의 시 논의되었는데, 그 결과 캄보디아 법무부는 재판전 구금 절차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특별재판소의 실행에 따라 구금 결정 시 판사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요건을 도입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특별재판소의 실행을 국내 시스템에 도입하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특별재판소의 판례 ‘유산’을 촉진하는 일환으로 형사소송법 주해(the Annotated Cambodian Code of Criminal Procedure)를 발간하였다. 3년에 걸쳐 진행된 이 작업에는 세계 여러 곳의 법률팀이 참여하였고 관련 국제 판례와 국내 판례가 포함되었는데, 최근 캄보

아의 역사상 이와 같은 형태의 법률 주해서가 발간된 것은 처음이다.

(나) 개별국가와의 기술협력

캄보디아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법무부를 중심으로 법 및 사법 체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1993년 캄보디아 왕국이 재건된 이후 법 및 사법 체계 개선이 주요 목표가 되었고, 법치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캄보디아는 이 과정에서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여러 국가들과의 기술협력을 추진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형사 및 형사소송 관련 법령의 입안 지원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고, 호주의 경우 일부 지역 및 프놈펜에서 사법경찰·법원·교도소 지원을 포함한 형사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996년부터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춘 법 및 사법 분야 훈련 과정을 개설한 일본의 경우 1997년 하반기에 캄보디아의 법 및 사법 관련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법무부에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1998년 2월에는 캄보디아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예비조사팀을 파견하였다. 1999년부터는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통하여 법 및 사법 발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캄보디아의 시장경제 도입에 적합한 법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법 및 민사소송법 제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1단계 프로젝트는 1999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2단계 프로젝트는 2004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3단계 프로젝트는 2008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진행되었다. 4단계 프로젝트는 2012년 4월에 시작되었으며, 2017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단계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I

II

III

IV

V

● 표 III-2 일본-캄보디아 법 및 사법 분야 기술협력 프로젝트 개요⁴³

단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목표	주요 활동
1단계	주요 정부 정책 형성 지원을 위한 일본의 협력	법령 입안, 법집행절차 향상, 법조 인력의 지식 및 역량 제고를 통하여 캄보디아 법체계 내에서 인적자원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법무부와 법령입안 및 법집행절차 관련 기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전문적 경험 제공 • 법조 인력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 실제 법 작용 환경에 대한 사회조사 지원
2단계	법 및 사법 발전을 위한 일본의 기술협력 프로젝트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입법 촉진을 위한 여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 스케줄을 고려하여 캄보디아 법무부 내 법전위원회의 작업 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수행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법조인을 위한 세미나 개최, 민사소송법 집행을 위한 매뉴얼 마련 • 경과조치를 위한 규정 입안, 내용 설명을 위한 워크숍 개최 • 경과조치를 위한 규정과 관련되는 법률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 내용 설명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민법 및 민사소송법과 관련되는 법률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 내용 설명을 위한 워크숍 개최, 각각의 법률의 조문에 대한 이해 촉진을 위하여 일본에서 훈련 실시, 법령안 마련
3단계	법 및 사법 발전 프로젝트	캄보디아 법무부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민법 및 민사소송법과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법무부가 민법 및 민사소송법 관련 법령을 입안하고 유관 기관들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문 제공 • 캄보디아 법무부가 법 및 사법 분야 관련 당사자들에게 대하여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민법 및 민사소송법 이행에 필요한 지침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 제공

⁴³- JICA의 대상국가별 기술협력 관련 정보는 JICA,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 <<http://www.jica.go.jp/project/english/index.html>>. (검색일: 2015.9.6.)

단계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목표	주요 활동
4단계	법 및 사법 발전 프로젝트	민법 및 민사소송법이 적절히 그리고 독립적으로 이행되고 널리 유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들에 대한 캄보디아 법무부 공무원, 법조인, 대학교수 등의 이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법무부, 캄보디아 왕립 사법연수원, 캄보디아 변호사협회, 캄보디아 왕립법대학 각각의 워킹그룹 조직 지원 · 워킹그룹별 민법 및 민사소송법 이해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지원 · 일본 전문가 장기 또는 단기 파견 · 일본에서 훈련 진행

나. 미얀마

(1) 배경

1988년 신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1990년 총선 결과 무효화, 아웅 산 수 치(Aung San Suu Kyi) 여사를 비롯한 다수의 정치인 구금,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자, 유엔 총회는 1991년부터 매년 미얀마인권결의를 채택해 왔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2년부터, 인권위원회를 승계한 인권이사회는 2007년부터 매년 미얀마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특별절차로서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⁴⁴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활동 중이다.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시민정부로의 권력 이양, 새로운 헌법의 제정 등에 대한 진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

44- UN Doc. E/CN.4/RES/1992/58 (3 March 1992).

여 캄보디아 정부 및 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이를 총회 및 인권 위원회에 보고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첫 번째 특별보고관으로는 요코타 요조(Yokota Yozo)가 임명되었고, 요코타 요조는 1993년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였다.⁴⁵ 이 보고서에서는 미얀마에 심각한 탄압과 공포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미얀마의 국내법을 인권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에 합치시킬 필요성을 지적한 후 새로운 헌법 및 법령의 제정을 위하여 법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경험을 공유할 것, 법집행 인력에 대한 인권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후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는 매년 연장되어, 2015년 현재 이 양희(Lee Yanghee) 특별보고관이 활동하고 있다.

(2) 내용

(가) 유엔과의 기술협력

미얀마는 2011년 3월 떼인 세인(Thein Sein)이 초대 민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정치범 석방, 언론과 집회에 대한 통제 완화 등 정치적 자유화 조치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1년 미얀마에 대한 1차 UP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및 OHCHR 과 협력하라는 내용의 권고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⁴⁶ 토마스 오제아 키타나(Tomás Ojea Quintana) 특별보고관은 2012년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에서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언급하는 한편, 미얀마 내 법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이해당

⁴⁵- UN Doc. E/CN.4/1993/37 (17 February 1993).

⁴⁶- UN Doc. A/HRC/17/9 (24 March 2011).

사자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법령을 검토·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 OHCHR로부터의 지원을 추구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⁴⁷ 이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미얀마인권결의에서도 미얀마의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비난하는 내용 중심이었던 과거의 결의와는 달리 미얀마의 인권개선 노력과 민주화 성과를 환영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장려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⁴⁸ 특히 미얀마 정부와 OHCHR과의 대화를 환영하며, 미얀마 정부가 인권 개혁을 지속하고 공고히 하기 위하여 OHCHR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권이 사회 또한 2012년에 채택한 미얀마인권결의에서 미얀마의 변화를 환영하고 OHCHR과의 대화 및 협력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미얀마 정부에 대하여 2011년 설립된 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OHCHR 및 국제공동체로부터의 기술지원을 추구하라고 촉구하였다.⁴⁹ 이후 인권이사회가 2013년, 2014년, 2015년에 채택한 미얀마인권결의에서는 국제공동체에 대하여 국제인권의무의 실현, 민주화 이행 과정,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개발 과정에서 기술지원과 역량구축 등을 통하여 미얀마 정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계속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OHCHR 국가사무소 설치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약속을 요구하였다.⁵⁰

47- UN Doc. A/67/383 (25 September 2012).

48- UN Doc. A/RES/67/233 (24 December 2012).

49- UN Doc. A/HRC/RES/19/21 (26 April 2012). 인권이사회는 그 이전인 2009년, 2010년, 2011년에도 미얀마 정부에 대하여 OHCHR과 협력하여 군인, 경찰, 교정인력을 대상으로 인권 및 국제인도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것과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OHCHR과의 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UN Doc. A/HRC/RES/10/27 (27 March 2009); UN Doc. A/HRC/RES/13/25 (15 April 2010); UN Doc. A/HRC/RES/16/24 (12 April 2011).

50- UN Doc. A/HRC/RES/22/14 (10 April 2013); UN Doc. A/HRC/RES/25/26 (15

인권이사회가 2012년 결의에서 촉구한 바와 같이 미얀마 정부와 OHCHR은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술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⁵¹ OHCHR은 정부직원·의회의원·시민사회 대상 세미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직원 대상 훈련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 등과 같은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국가인권기관에 관한 국제적 최소 기준인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부합되는 기관의 설치를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다. 2013년에는 ‘파리원칙’에 부합되게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관이 법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OHCHR, APF, 국제적 전문가 및 파트너들이 법안의 의회 제출 전후로 법안의 실질적·절차적 요소에 대한 기술협력과 자문을 제공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4년 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특별절차로서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의 경우 2011년도까지는 미얀마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로 수행하였으나, 이후 인권상황의 변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술협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토마스 오제아 키타나 특별보고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보고서에서 법치에 관한 별도의 항목을 두고 법치 강화를 위한 미얀마의 노력을 평가하고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연도별 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요 자문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April 2014); UN Doc. A/HRC/RES/28/23 (2 April 2015).
⁵¹- UN Doc. A/HRC/27/41 (24 July 2014), paras. 22~24.

● 표 III-3 특별보고관의 주요 자문내용⁵²

보고서 연도	주요 자문내용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 개선을 위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전략이 부재하므로 유사한 과정을 경험한 국가들 사례 참조 ▪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사법부는 법치를 유지하는 것과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므로,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제기구 등과 협력(그러한 프로그램에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할 것) ▪ 법이 국제인권기준에 합치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변호사협회 설립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제고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모듈과 '유엔의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을 판사들에 대한 교육과정에 완전히 통합 ▪ 일반 주민들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제고와 사법부에 대한 접근 향상을 위하여 법률구조시스템 마련, 자문사무소 설치 등의 선도적 조치 ▪ 의회에 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새로운 법령이 미얀마의 국제인권 관련 의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점검 ▪ 법령 제정 시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유의미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법령을 공개적이고 광범위하게 전파 ▪ 법치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부 확립, 적법절차 보장, 국내법이 국제인권의무에 배치되는 경우 그러한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 금지, 인권침해 조사 메커니즘 확립, 국제적 기술지원 추구 ▪ 변호사의 직업적 독립을 보장하고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타 인권기준에 합치되는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호사협회를 자치전문가협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호사협회법 개정 ▪ 2011년 설립된 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원칙'에 따른 독립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 법치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의 책임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대에 대한 인간의 감시 및 통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헌법 개정

⁵²- UN Doc. A/67/383 (25 September 2012); UN Doc. A/HRC/22/58 (17 April 2013); UN Doc. A/HRC/25/64 (2 April 2014).

(나) 개별국가와의 기술협력

미얀마는 2011년 떼인 세인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자유화 및 경제개혁과 더불어 대외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탄압을 이유로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주도해 왔던 미국과의 관계 역시 2011년 하반기 이후로 진전되어, 미국은 2012년 제재조치를 일부 완화하고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정상화하였다. 그리고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하였을 때 미얀마의 개혁을 진전시키기 위한 미국-미얀마 파트너십을 발표하였다. 이는 미얀마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지하면서 추가적인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인데, 여기에는 미국의 대외원조 실시기관인 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사무소를 미얀마에 다시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USAID는 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 ② 투명한 거버넌스, ③ 평화 및 화해, ④ 번영의 네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하고 있다.⁵³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분야는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 분야와 투명한 거버넌스 분야이다. USAID가 각 분야에서 추구하는 바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 표와 같다.

⁵³- USAID, "Fact Sheet on the United States-Burma Partnership for Democracy, Peace, and Prosperity," <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1861/USAID_Burma_framework_fact_sheet.pdf>. (검색일: 2015.9.9.).

● 표 III-4 USAID-미얀마 협력 내용⁵⁴

협력 분야	내용	프로그램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	<p>법치, 인권의 존중, 견고한 시민사회, 활기에 넘치는 의회시스템, 독립적인 미디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 2015년 자유롭고 신뢰할만한 선거 준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대상지원(targeted assistance)을 통하여 정치적·경제적 개혁 과정을 지원하고 가속화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및 정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만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행정 개선 지원 - 투표자 교육과 선거과정에 대한 초당적 관리감독을 위한 지역 관계자 및 기관 역량강화 지원 - 의회 기능 향상 지원(입법·예산·관리 감독 기능이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수행 되도록 특정 위원회를 지원하는 데 초점) - 시민의 이해를 보다 잘 대변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민주적 정당 역량강화 지원 ▪ 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치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지원 - 사법 부문 개선을 통하여 법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미얀마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 인신매매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지역·국내 NGO와 협력 -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 및 보호 노력에 있어서 미얀마 정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국내 NGO 역량 제고 지원
투명한 거버넌스	<p>미얀마 주민 및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포괄적이고 형평에 맞으며 투명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지원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접근의 자유 향상 지원 ▪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관련 법 제정 지원 ▪ 미디어 및 인터넷 검열 관련 법 폐지 지원 ▪ 새로운 NGO 법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지원

⁵⁴- USAID, “Fact Sheet on Burma Democracy,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1861/2013_BURMA_DRG_FactSheet.pdf>. (검색일: 2015.9.9.).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으로서, USAID는 2013년도부터 프로젝트 컨설팅업체인 테트라 테크(Tetra Tech)와 계약을 체결하여 미얀마 법치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⁵⁵ 프로젝트 기간은 3년이며(2013. 10~2016. 9), 지원 규모는 800만 달러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미얀마에서 법치 및 시민의 자유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법 관련 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이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의 미얀마 측 주요 카운터파트는 미얀마 법무부(The Union Attorney General's Office), 대법원, 의회 법치 및 평온 위원회(The Parliamentary Committee on Rule of law and Tranquility), 시민사회 등이다. 기대되는 결과로는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이 있으며 접근이 쉬운 사법기관 구축, 법무부의 역량강화, 사법부의 자치 및 개혁 지원, 공공정책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사회의 발전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 스리랑카

(1) 배경

스리랑카에서는 1983년부터 2009년까지 26년간 지속된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 반군 간의 내전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자, 2009년 5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스리랑카를 방문하였다.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스리랑

⁵⁵- 관련 정보는 Tetra Tech DPK, "Myanmar Promoting Rule of Law Project," <www.tetrattechdpk.com/en/component/content/article/167-myanmar/610-myanmar-promoting-rule-of-law-project.html>. (검색일: 2015.9.10.).

카 대통령은 스리랑카 정부가 내전 중 발생한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책임규명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⁵⁶ 그러나 이후 스리랑카 정부는 책임규명을 위한 유의미한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국제적 조사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자, 2010년 6월 유엔 사무총장은 특히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책임규명 이슈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에게 조언할 전문가 패널(the Panel of Experts)을 구성하였다.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전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야스민 수카(Yasmin Sooka) 전 남아프리카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스티븐 라트너(Steven Ratner) 미시간 대학교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임명되었다. 전문가 패널은 2011년 4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 반군 양측 모두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일부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이 보고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한편 라자팍사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한 타협으로 2010년 5월 자체 조사위원회로서 ‘교훈화해위원회(Lessons Learnt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를 설치하였고, 해당 위원회는 2011년 12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스리랑카 군대는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한 것은 아닌 반면, 타밀 반군은 반복적으로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는데,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⁵⁶-United Nations, “Joint Statement by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Government of Sri Lanka,”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 (25 May 2009), <<http://www.un.org/press/en/2009/sg2151.doc.htm>>. (검색일: 2015.9.11.).

대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스리랑카 화해 및 책임규명 촉진’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⁵⁷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결의들에서 스리랑카 정부에 대해서는 교훈화해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된 건설적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OHCHR 과 관련 특별절차 임무수행자(mandate holders)에 대해서는 스리랑카 정부와 협의 및 협력하여 기술지원 및 자문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OHCHR에 대해서는 지원 제공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에는 ‘스리랑카 화해, 책임규명, 인권 촉진’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는데, 이 결의에서는 상기 사항들 외에도 OHCHR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및 특별절차 임무수행자의 도움하에 스리랑카에서 교훈화해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기간 중 양측에 의한 인권침해·유린 및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불처벌을 막고 책임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침해 및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 및 상황을 규명할 것”을 요청하였다.⁵⁸

이에 따라 OHCHR은 스위스 제네바에 스리랑카 조사단(OHCHR Investigation on Sri Lanka)을 설치하였다.⁵⁹ 조사의 기저를 이루는 법적 틀(legal framework)은 스리랑카가 국제인권조약상 부담하는 모든 의무와 관련 국제관습법상 부담하는 모든 의무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조사 대상 기간 중 비국제적 무력충돌이 있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네바 협약상 관련 규정 등 국제인도법의 적용도 필요시 된다. 나아가

⁵⁷- UN Doc. A/HRC/RES/19/2 (3 April 2012); UN Doc. A/HRC/RES/22/1 (9 April 2013).

⁵⁸- UN Doc. A/HRC/RES/25/1 (9 April 2014).

⁵⁹- 관련 정보는 <<http://www.ohchr.org/EN/HRBodies/HRC/Pages/OISL.aspx>>. (검색일: 2015.9.11.).

범죄가 자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제형사법의 적용도 요구된다. 인권최고대표는 2014년 6월 조사를 통한 독립적인 검증과 지원 및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르티 아티사리(Martti Ahtisaari) 전 핀란드 대통령, 실비아 카트라이트(Silvia Cartwright) 전 뉴질랜드 고등법원 판사, 아스마 자하져(Asma Jahangir) 전 파키스탄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의 전문가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단호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거부하였고, 관련된 어떠한 절차에도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정부 관료와 공무원들은 OHCHR의 조사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였고, 보다 심각하게는 OHCHR에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 목격자, 시민사회대표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위협과 협박을 가하였다. 하지만 2015년 1월 전향적이고 개혁적인 노선의 마이쓰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가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신정부가 구성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신정부는 조사단과의 협력과 관련한 기존의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조사팀의 스리랑카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지만, 책임규명 및 재건 과정을 위한 가능한 대안들에 대하여 인권최고대표 및 OHCHR과 보다 건설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2) 내용

(가) 유엔과의 기술협력

OHCHR은 2004년 6월부터 스리랑카 유엔 국가팀(UN Country Teams)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 자문가(human rights adviser)를 파견해 왔다. OHCHR은 유엔 상주조정관(UN Resident Coordinators)의 요청에 따라 유엔 국가팀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 자문가를 파견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인권의 증진 및 보호에 있어서 국가들의 역량 및 제도를 구축·강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유엔 상주조정관과 유엔 국가팀에 의견을 제시한다. 이들은 또한 국제인권기준을 가장 잘 촉진하고 이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정부 및 시민사회와 논의하기도 한다. 현재 29개국(방글라데시, 차드,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몰도바, 나이지리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필리핀, 러시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남코카서스,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동티모르, 태국, 우크라이나, 잠비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에 OHCHR 인권 자문가가 파견되어 있다.⁶⁰ 스리랑카에 파견된 인권 자문가는 OHCHR이 설정한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역량구축과 인권의 주류화를 위하여 유엔 상주조정관과 유엔 국가팀에 대하여 기술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권 자문가는 또한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내 역량강화를 위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 및 다른 국내 이해당사자에게 기술지원과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⁶¹

한편 OHCH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결의에서 촉구한 바와 같이 스리랑카와의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12년 9월 OHCHR 기술단(technical mission)을 파견하여 전후 책임규명 및 화해에 대한 진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 11월 26일 인권 최고대표는 OHCHR과 스리랑카 간 기술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스리랑카 정부에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제안 사항은 2013년에 OHCHR이 인

⁶⁰- 관련 정보는 OHCHR, “Human Rights Advisors,” <http://www.ohchr.org/EN/Countries/Pages/HumanRightsAdvisors_Index.aspx>. (검색일: 2015.9.11.).

⁶¹- 관련 정보는 OHCHR, “OHCHR in Sri Lanka,” <<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LKSummary.aspx>>. (검색일: 2015.9.11.).

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언급이 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진실 추구 메커니즘(a truth-seeking mechanism) 확립 지원;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국제기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 및 과학수사 지원; 증인 및 피해자 보호, 정보권, 강제실종의 범죄화 관련 법령 입안 지원과 자유권규약과 고문방지협약에 합치되도록 기존 법령 개정 지원; 국가기관의 독립성 강화 및 보장 지원;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배상정책 확립 지원.⁶² OHCHR은 제안된 분야들이 전환기 정의에 대한 종합적이고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의 네 가지 주요 요소, 즉 진실에 대한 권리, 형사정의 및 책임규명, 법적·제도적 개선,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속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최고대표의 기술협력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2013년 8월에는 스리랑카 정부의 초청으로 인권최고대표가 직접 스리랑카를 방문하였고, 이후 인권최고대표는 OHCHR과 스리랑카 간의 기술협력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2014년 보고서에서 인권최고대표는 진실 추구 메커니즘과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배상정책의 확립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하면서 스리랑카 정부에 대하여 OHCHR의 기술지원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⁶³ 2015년 스리랑카 신정부 출범 이후 OHCHR이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를 다룰 혼합특별법정(hybrid special court)의 설치 권고가 포함되었다.⁶⁴ 인권최고대표는 스리랑카 신정부가 책임규명 문제를 다루겠다

⁶²- UN Doc. A/HRC/22/38 (11 February 2013).

⁶³- UN Doc. A/HRC/25/23 (24 February 2014).

⁶⁴- UN Doc. A/HRC/30/61 (28 September 2015).

고 약속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를 “국가의 법적 틀 내에서(within the country’s legal framework)” 다루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⁶⁵ 인권최고대표는 절차의 독립성 및 공정성의 측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스리랑카인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국제적인 메커니즘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OHCHR은 그런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자문과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⁶⁶

(나) 개별국가와의 기술협력

스리랑카의 인권개선과 관련하여 적극 협력하고 있는 국가로는 스위스를 꼽을 수 있다. 스위스에는 비유럽권 커뮤니티로는 최대 규모인 5만 명 정도의 스리랑카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는 스리랑카에 대하여 유의미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스리랑카에 대한 지원은 주로 스위스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스는 2003년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 반군 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스리랑카 정부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콜롬보와 자프나에 SDC 프로그램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2011년에 특별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으나, 이후 같은 취지를 가진 원조자들과 협의하고 계속되는 인도적 재건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SDC가 스리랑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포괄적 평화 구축, 재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지원 및 촉진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력 전략 2013~2015는

⁶⁵- *Ibid.*

⁶⁶- *Ibid.*

다음의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다: 스리랑카 북부 지역의 복원과 사회적·경제적·시민적 재건;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 정치적 대화 및 법치 지원. 이 중 특히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세 번째 분야, 즉 정치적 대화 및 법치 지원 분야이다. 특히 SDC는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법치에 대한 존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률구조 및 공익 소송 지원, 주요 국제조약 비준 촉구, 분야별 특별보고관과 같은 유엔 특별절차와의 협력 강화, 관련 국내외 행위자들과의 조율, 관련 시민사회조직들의 역량구축과 이들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⁶⁷ 이와 같은 지원을 위한 세부 체계는 다음과 같다.

● 표 III-5 법치 분야 지원 세부체계⁶⁸

목표	프로그램의 기여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리랑카는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추가적으로 비준 및 이행, 그리고/또는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그리고 시민사회조직은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수단을 활용 - 지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준한 조약 숫자 2) 초청한 특별절차 숫자 및 유형 3) 국제적 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의견개진 숫자 및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프로그램은 국가 기관으로 하여금 인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이와 관련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기여 - 기본적인 추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 촉진에 관한 스스로의 약속을 준수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2) 인권 보호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활동 및 관심 3) 스리랑카 정부와의 인권대화를 위한 국제공동체의 일관되고 일치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적·국제적 약속과 부합되는 인권존중과 법치작용 - 지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사항 이행 2) 교훈화해위원회 권고사항과 UPR 시행해진 약속의 이행

⁶⁷-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wiss Cooperation Strategy Sri Lanka 2013-2015* (Sri Lanka, 2013), p. 16.

⁶⁸- *Ibid.*, p. 26.

라. 중국

(1) 배경

냉전이 해체된 80년대 말 이전 중국의 인권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 중국이 대만 대신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된 1970년대는 물론 1970년대 말 신냉전 때 서방세계, 특히 미국은 소련의 인권은 강하게 비판했어도 중국의 인권문제는 크게 제기하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인권외교를 표방했던 카터 대통령 시절인 1979년 1월 미국과 중국은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였다. 중국은 1981년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국(현 인권이사회 전신)으로 정식 선출되었다. 1980년대 들어 중국이 대외개방에 따라 중국의 내부 인권상황이 점차 외부에 노출되면서 중국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 특히 서방국가와 마찰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인권 상황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주된 의제로 부각되었다. 인권위원회에는 중국에 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해마다 이를 둘러싼 중국과 서방국가의 정치적 충돌이 고조되었다. 결국 1995년 처음으로 중국의 인권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나 한 표 차이로 결의안이 부결되었다.

이 사건을 전후해서 중국은 기존의 강경책에서 보다 유화적인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중국은 1994년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와 신념의 자유(당시 종교적 불관용) 특별보고관의 중국 방문조사를 허용하였다. 1995년 12월 두 번째로 발간한 인권백서 『중국에서 인권의 발전』에서 국제인권을 존중하고 유엔과의 인권협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서방국가와 유엔의 대중국 입장 변화로 이어졌고 중국은 이에 부응하여 1997년 10월 사회권규약(CESCR)과 1998년 10월 자유권규약

(CCPR)에 서명하였다.⁶⁹ 그리고 1997년 10월 두 번째로 유엔의 특별 절차인 자의적 구금 워킹그룹의 방문조사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메리 로빈슨 당시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최고대표로 1998년 중국을 처음 방문하여 인권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도 1995년부터 정치범 석방 등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중국 연례 인권대화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적극적 조치의 결과 1998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는 중국인권결의안을 더 이상 상정하지 않았고, 대신 다양한 형태의 인권증진 프로그램과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특히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국제사회에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인권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엔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 2009년 처음으로 국가인권행동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적 분위기는 곧 위기에 봉착하였다.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2010년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Liu Xiaobo, 劉曉波)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서방국가와의 인권 분야 협력은 축소 냉각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특별보고관이 공동으로 2011년 리우시엔빈(Liu Xianbin, 劉賢斌), 천웨이(Chen Wei, 陳衛), 그리고 천시(Chen Xi, 陳西)에 대한 유죄 판결과 가오즈성(Gao

⁶⁹ 중국은 사회권규약의 경우 2001년 비준하여 발효 중이고 자유권규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전에 9개 주요 인권조약 중 1980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988년 고문방지협약(CAT), 1992년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하였다. 이후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CPD)을 비준하여 2015년 현재 사회권규약을 포함, 모두 5개의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였다.

I
II
III
IV
V

Zhisheng's, 高智晟)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및 실종 사건에 대한 비난, 그리고 뉴욕의 유엔 앞에서 단식투쟁에 대해 서한을 보낸 것이 발단이 되어 중국 정부는 인권 협력에 대해 다시 방어적이면서도 때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2012년부터 시행된 제2차 국가인권행동계획은 그 이전의 계획에 비해 목표와 내용 모두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은 2006년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사국으로 참여해왔고 2009년과 2013년 UPR에 따른 심의를 받았다. 현재 가입 비준한 5개 인권조약위원회의 정기적인 심의를 받았다. 그리고 2003년 교육권, 2004년 자의적 구금, 2005년 고문, 2010년 식량권, 2013년 여성차별, 2015년 외채 등 다양한 특별절차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04년 헌법에 인권 존중과 보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고, 2007년 중국 공산당 당규에도 인권개념을 포함하여 인권은 이제 중국에서 법적 규범으로 자리잡았다.

앞에서 간단히 서술했듯이 중국의 인권 기술협력은 정치적이고 선택적이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견지해온 중국식 사회주의의 인권관과 인권외교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졌듯이 중국은 주권을 인권보다 상위가치이자 원칙으로 간주하고 서구적 가치로 이해되는 인권의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 또는 상대주의적 인권관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개인보다는 집단의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보다는 사회경제적 권리를 더 강조해왔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과의 글로벌 헤게모니 경쟁관계를 의식하여 서방의 인권비판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미국의 중국인권보고서에

대응하여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인권상황보고서를 독자적으로 발행해 왔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인권백서를 발간하여 스스로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주도하고 있다.⁷⁰

한편 중국 정부는 1993년 중국인권연구협회를 설립하여 인권 분야의 대표적 비정부단체(NGO)로 육성해왔다.⁷¹ 중국인권연구협회는 그동안 조사연구와 교육훈련 등 다양한 인권 관련 행사를 주관해 왔는데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2008년부터 북경인권포럼을 해마다 조직해왔다.⁷² 그리고 영문으로 인권 계간지를 발간해왔다.⁷³ 그러나 중국인권연구협회의 활동과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입장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내용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 분야의 기술협력은 크게 OHCHR과 유럽연합(EU), 그리고 개별국가로 호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⁷⁰ 백서의 영어 명칭은 *Progress in China's Human Rights in 2014*. 2015년 6월에 발간된 2014년 백서 목차의 내용은 발전권, 개인의 권리, 민주적 권리, 공정한 재판, 소수민족의 권리, 여성, 아동, 노인의 권리, 장애인 권리,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권, 국제교류와 협력으로 구성되어있다. 발전권을 가장 먼저 배치하여 중국 정부의 인권관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China Society for Human Rights Studies, *Progress in China's Human Rights in 2014*, <http://www.chinahumanrights.org/html/2015/WP_0608/2699.html>. (검색일: 2015.11.16.).

⁷¹ 영어 명칭은 China Society for Human Rights Studies. <http://www.chinahumanrights.org/CSHRS/Introduction/t20070628_262536.htm>. (검색일: 2015.11.16.).

⁷² 영어 명칭은 Beijing Forum on Human Rights. <<http://www.chinahumanrights.org/Messages/Focus/Focus007/index.htm>>. (검색일: 2015.11.16.).

⁷³ 영어 명칭은 *The Journal of Human Rights in China*. <<http://www.chinahumanrights.org/html/PR/MAGAZINES/>>. (검색일: 2015.11.16.).

있다. 유럽연합과 서방 국가는 정례적인 인권대화를 시행해왔다.⁷⁴ 이러한 사업 중 기술협력의 성격에 보다 부합하는 OHCHR과 호주의 사례를 소개한다.

(가) 유엔과의 기술협력

OHCHR은 중국 정부와 2000년 처음으로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해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국가인권행동계획 수립 자문을 들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09~2010년 2년간의 제1차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실행하였고 이후 다시 2012~2015년 4년간의 제2차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실행중이다.⁷⁵ OHCHR은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문을 제공하였다.

국가인권행동계획은 중국이 유엔과 협력하여 진행한 대표적인 기술협력 프로그램이다. 먼저 시범적 사업이었던 2년의 첫 계획 이후 두 번째 국가인권행동계획이 4년 중기 계획으로 전화하였다는 점은 중국정부가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인권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미국도 아직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제정하지 않고 있고 현재 유엔 회원국 중 35개국만이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행동계획이 지닌 정치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목차에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시민·정치적 권리보다

⁷⁴- EU-중국 인권대화는 1995년 처음 시작하여 연 2회 실시되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 1회로 축소되었다.

⁷⁵- 제1차 국가인권행동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는 아래 링크 참조. China Society for Human Rights Studies, "Assessment Report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of China(2009~2010)," <http://www.chinahumanrights.org/Whitepapers/Reports/t20110714_768804.htm>. (검색일: 2015.11.16.).

앞에 배치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인권관을 반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미국을 비판하는 미국인권보고서를 계속해서 발간하는데서 보듯이 중국은 이른바 미국과 서방의 ‘인권외교 공세’에 대한 대응으로 인권정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유엔의 권고인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권이 더 이상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고 ‘자국이 더 유엔의 권고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있다’는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행동계획의 틀은 유지하되 구체적 내용과 우선순위는 중국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기술협력을 매우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인권외교의 수단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해 왔다. 서방의 중국인권에 대한 비판이 약화될 때 기술협력이 확대되고, 비판이 강화될 때 축소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 표 III-6 중국의 국가인권행동계획 비교

	1차 국가인권행동계획 (2009~2010년)	2차 국가인권행동계획 (2012~2015년)
I.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1) 노동권 (2) 기초생활보장권 (3) 사회보장권 (4) 건강권 (5) 교육권 (6) 문화권 (7) 환경권 (8) 농민의 권리와 이익 보장 (9) 웨추안(Wenchuan)과 스촨성(Sichuan) 지진 피해 재건지역 인권보장	(1) 노동권 (2) 기초생활보장권 (3) 사회보장권 (4) 건강권 (5) 교육권 (6) 문화권 (7) 환경권
II. 시민 정치적 권리의 보장	(1) 인격권 (2) 구금자 권리 (3)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4) 종교 자유 (5) 알권리 (6) 참여권 (7) 청문권(Right to be heard) (8) 감독의 권리(Right to oversee)	(1) 인격권 (2) 구금자 권리 (3)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4) 종교 자유 (5) 알권리 (6) 참여권 (7) 청문권(Right to be heard) (8) 감독의 권리(Right to oversee)
III. 소수민족,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의 권리 보장	(1) 소수민족의 권리 (2) 여성의 권리 (3) 아동의 권리 (4) 노인의 권리 (5)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	(1) 소수민족의 권리 (2) 여성의 권리 (3) 아동의 권리 (4) 노인의 권리 (5) 장애인의 권리
IV. 인권교육	지속적 확대	지속적 확대
V. 국제인권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과 국제인권 분야 교류와 협력	(1)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과 (2) 국제인권 분야 교류와 협력	(1)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과 (2) 국제인권 분야 교류와 협력
VI. 이행과 감독	내용 없음	신설

출처: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of China (2009~2010). <<http://www.ohchr.org/EN/Issues/PlansActions/Pages/PlansofActionIndex.aspx>>. (검색일: 2015.10.15.);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of China (2012~2015). <http://www.china.org.cn/government/whitepaper/node_7156850.htm>. (검색일: 2015.10.15.).

(나) 개별국가와의 기술협력

중국 유엔 협회(UN Association-China)는 2004년부터 호주국제개발청(AusAID)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인권 분야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해왔다.⁷⁶ 주요 사업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델 유엔 회의, 인권 지식경연대회, 인권훈련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대상은 청년, 특히 대학생으로 인권감수성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소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유엔 협회는 유엔 협의자격을 이용해서 다양한 유엔 활동에 참여해왔다. 유엔 공보국(UN DPI), 유엔 협의자격 협의회(CoNGO)와 국제 유엔 협회연맹(WFUNA)의 회원단체로 다양한 국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 시사점

국제사회와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및 중국과의 기술협력 사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은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압력과 해당국가의 개방 또는 자유화나 민주화 즉 해당국가의 정치적 의지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즉 대부분의 기술협력은 부인의 단계가 아닌 전술적 양보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 1992년부터 계속 미얀마인권결의가 채택되어 왔고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활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

⁷⁶ 중국 인권협회는 형식적으로 NGO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외교부의 재정과 인력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 인권협회, <<http://www.unachina.org/en/>>. (검색일: 2015.11.16.).

년 3월 때인 세인 신정부 출범 이후에야 국제사회와의 기술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스리랑카의 경우에도 2009년 내전 종료 이후 전환기 정의 실현과 이를 위한 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국제사회의 압박과 관여에 대하여 부인하고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2015년 1월 마이쓰리팔라 시리세나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1990년대 중후반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대중국 인권결의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내전과 같은 정치적 사건은 그 자체가 새로운 인권침해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인권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지만, 특히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이 클수록 국제사회의 관여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을 강력하게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랜 기간의 내전으로 교육·보건·사회보호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조가 붕괴되었던 캄보디아가 대표적인 예이다. 냉전체제 완화 및 해체에 따른 국제정치 환경 변화와 맞물려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 전개되었고, 이것이 곧바로 적극적인 기술협력으로 이어지게 된 경우이다. 처음부터 캄보디아에 현장사무소가 설치되었고, 이 사무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셋째, OHCHR과 개별국가 간에 기술협력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보면, 법령 입안 및 이행 지원, 조약 이행 지원과 같은 기술적이고 정치성이 약한 분야에서 시작하여 국가기관 및 정부기구 정비, 사법제도 개선과 같이 보다 정치성이 강한 분야로 나아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권 훈련, 인권 교육 등을 통하여 해당 국가의 자체적인 인권개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협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개별적인 권리나 구체적인 사안 중심으로 기술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유엔이나 개별국가가 심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법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법치지원이 국제사회가 인권침해국의 민주화 및 인권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⁷⁷

다섯째, 해당 국가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유엔의 경우 법치 분야를 포함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술협력’이란 틀 아래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별국가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법 및 사법 분야와 같이 매우 제한된 분야에 국한하여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기술협력’보다는 특정 분야에서의 협력 또는 특정 분야 지원 정도의 틀 아래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⁸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 기술협력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기술협력’으로 범주화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별 인권특별보고관이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자문 제공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술협력을 추구하는 사례 또한 확인된다. 미얀마 사례를 보면, 토마스 오제아 키타나 특별보고관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에서의 법치 강

77-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에 관한 연구로는 이금순·도경옥,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4) 참조.

78- 이러한 점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기술협력 활동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연구의 논지에 부합하며, 나아가 인권 분야에서 ‘기술협력’ 용어 자체가 여전히 유엔을 중심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화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다수의 자문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개별 국가는 자국의 정치적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제안에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부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OHCHR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법치 지원 및 인권교육 강화, 주요 인권 조약 비준 촉구 등 다양한 사안을 중심으로 해당국의 인권상황을 개선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미얀마와 스리랑카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정치적 상황이 변하고 리더십의 의지와 결단이 작용할 때, 기술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인권개선 노력이 그 효과를 드러냄을 알 수 있다. 결국 국제사회가 그동안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기술협력 관련 활동 및 논의를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과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 이러한 지속적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II-7 4개국 기술협력 사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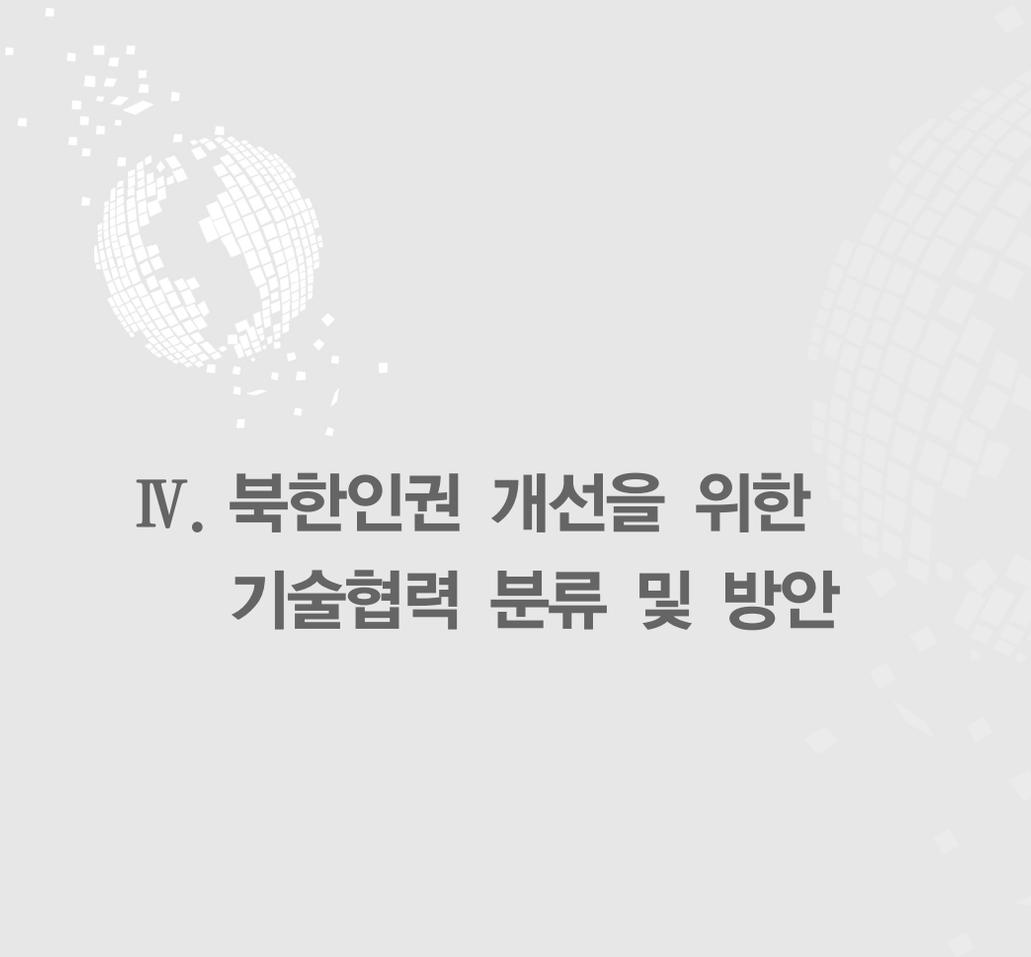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
정치적 상황과 정부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분야 기술협력에 소극적이며 선택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개방 이후 인권 기술 협력에 협조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1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이후 인권 기술협력에 협조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분야 협력에서 소극적이며 선택적
OHCHR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주 사무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콕 동남아 사무소에서 담당(현재 상주 사무소 설치 논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OHCHR 소속 인권전문가 UNDP 현지 사무소에 파견 스리랑카 조사단(OISL)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해각서 통한 기술협력(2000년~)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
<p>인권이사회</p> <p>* 구 인권위원회 (1946년~2006년)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 인권 결의 채택 (1993년~2003년) ▪ 국별 기술협력 결의 채택 (2004년, 2005년, 2008년~2011년, 2013년, 2015년) ▪ 사무총장 특별 대표 (1993년~2007년) ▪ 특별보고관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 인권 결의 채택 (1992년~) ▪ 특별보고관 (199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 인권 결의 채택 (2012년, 2013년,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 인권 결의안 제출 (1990년, 1992년~1997년) <p>* 표결에 의해 채택되지 못함</p>
국가인권기구	부재	2011년 설립	1996년도 설립	부재
국가인권행동계획	부재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국가인권 행동계획 (2011년~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국가인권 행동계획 (2009년~2010년) ▪ 제2차 국가인권 행동계획 (2012년~2015년)
<p>국제인권조약 비준</p> <p>* 연도 표기는 비준 또는 가입 연도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차별철폐협약 (1983년) ▪ 자유권규약 (1992년) ▪ 사회권규약 (1992년) ▪ 여성차별철폐협약 (1992년) ▪ 고문방지협약 (1992년) ▪ 아동권리협약 (1992년) ▪ 장애인권리협약 (2012년) ▪ 강제실종협약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협약 (1991년) ▪ 여성차별철폐협약 (1997년) ▪ 장애인권리협약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권규약 (1980년) ▪ 자유권규약 (1980년) ▪ 여성차별철폐협약 (1981년) ▪ 인종차별철폐협약 (1982년) ▪ 아동권리협약 (1991년) ▪ 고문방지협약 (1994년)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차별철폐협약 (1980년) ▪ 인종차별철폐협약 (1981년) ▪ 고문방지협약 (1988년) ▪ 아동권리협약 (1992년) ▪ 사회권규약 (2001년) ▪ 장애인권리협약 (2008년)

I
II
III
IV
V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
주요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치 지원 ▪ 인권교육과 훈련 ▪ 선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치 지원 ▪ 인권교육과 훈련 ▪ 국가인권기구 설립 지원 ▪ 선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치 지원 ▪ 인권교육과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과 훈련 ▪ 국가인권행동 계획 제정 지원
유엔 외 협력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프랑스, 호주, 일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미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스위스, 미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호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

출처: 앞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IV.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분류 및 방안

1. 인권 기술협력 분류

북한의 정치 및 외교적 상황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인권 기술협력은 현재 가능하지 않거나 선택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인권 분야 기술협력을 가급적 폭넓고 다양하게 해석해서 현재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현실적으로 북한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점차 그 범위와 규모를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상황을 고려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은 크게 기술협력 사업의 인권적 특성, 유엔 인권기구의 특성, 기술협력 사업의 내용 그리고 기술협력의 주체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가. 인권의 정치적 특성에 따른 분류

기술협력에서 다루는 내용의 인권의 정치적 특성에 따라 기술협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직접적, 명시적 인권 기술협력

OHCHR처럼 명시적으로 인권을 다루는 기구가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OHCHR이 UPR 권고안과 북한이 가입한 조약위원회 권고안 이행과 관련된 사업을 기술협력의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이다.

(2) 간접적, 묵시적 인권 기술협력

유엔 개발계획(UNDP)처럼 인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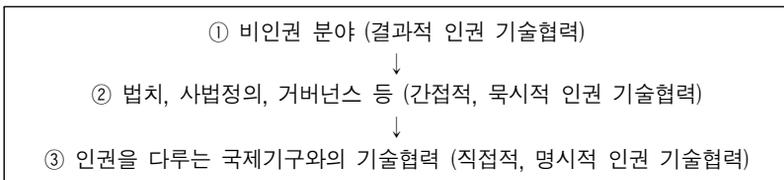
치, 사법정의와 거버넌스 등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권을 명시적으로 내세우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인권 내용을 다루는 경우이다.

(3) 결과적 인권 기술협력

인권을 목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사업의 결과로서 인권 증진 효과를 가져오는 비인권 분야 기술협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환경계획(UNEP) 등 유엔 전문기구나 프로그램의 비정치, 비인권 분야 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건강권, 환경권 등이 증진되는 경우를 말한다. 비정치적 분야로 이해되고 있는 모자보건, 아동영양 개선 등과 같은 인도적 지원사업도 예가 될 수 있다.

현재 직접적, 명시적 인권 기술협력은 당분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과 COI를 거부하면서 유엔 인권제도와와의 명시적 협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IV-1>에서 나타나듯이 비인권 분야에서 시작하여 간접적, 묵시적 인권협력을 거쳐 북한과 유엔과의 관계 회복에 따라 점차 직접적, 명시적 인권 기술협력으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표 IV-1 북한에 대한 기술협력 단계별 접근



출처: 저자 작성.

나. 유엔 인권기구의 특성에 따른 분류

유엔의 인권기구와 제도는 크게 조약에 기반한 기구와 헌장에 기반한 기구로 구분하며, 후자의 경우 정치적 기구인 인권이사회와 유엔 사무국의 일부인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기구와 제도는 기술협력의 내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권고안에 담고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내용의 일부를 예시한 것이다.

● 표 IV-2 유엔 인권기구와 북한 기술협력 사업 내용

분류		내용
조약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비준 국제인권조약 위원회 보고서 제출 권고안 이행
인권 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UPR)	<ul style="list-style-type: none"> UPR 보고서 준비 UPR 권고안 이행계획 수립
	특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 계획 수립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안 이행
안전보장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식안건 채택(2014.12~2017.12)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 북한인권사무소 (UN Human Rights Office in Seo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교육 역량강화 및 연수 국가인권기구 설립 준비 국가인권행동계획 준비

출처: 저자 작성.

북한 정부는 일관되게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과 특별보고관 그리고 COI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엔의 인권제도에서 기술 협력이 가능한 것은 북한이 인정하고 참여하고 있는 UPR과 4대 조약 위원회⁷⁹ 뿐이다.

⁷⁹ 자유권위원회(CCPR), 사회권위원회(CESCR), 아동권위원회(CRC)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를 의미한다.

다. 기술협력 사업의 내용에 따른 분류

한편 북한의 인권 기술협력의 구체적 사업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국가의 사례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술협력 사례는 국가인권행동계획 제정, 국가인권기구 설립, 사법제도 개혁, 인권교육, 인권침해 조사 훈련 등 매우 다양하다. 이를 크게 법, 제도, 정책 및 역량강화로 구분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IV-3 기술협력 사업의 내용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과 형법 등 개정 시 인권 기준 반영 ▪ 인권관련 법 제정 ▪ 기존의 법 인권적으로 개정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제도 ▪ 국가인권위원기구 ▪ 인권침해진정제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행동계획 ▪ 인권지표 ▪ 인권영향평가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 및 연수 ▪ 인권침해 조사 훈련

출처: 저자 작성.

라. 인권 기술협력의 주체에 따른 분류

인권 기술협력은 크게 유엔과 같은 다자 간 기구와 개별 정부의 양자 간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2장에서 제시되었듯이, 다자 간 기구의 경우도 다시 유엔과 비유엔으로, 인권을 포괄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북한의 가입 여부 등의 기준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양자의 경우도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여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의 경우 일단 유엔 인권이사회나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 - 찬성, 반대, 기권, 불참 - 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수교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 표 IV-4 다자 간 국제기구 기술협력 행위자 구분

유엔		비유엔	
유엔 인권기구	전문기구와 프로그램	지역기구	분야별 기구
조약기구 OHCHR	WHO UNICEF WFP FAO OCHA UNDP UNEP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아세안안보기구 (ARF)	민주주의와 선거지원연구소 (IDEA)

출처: 저자 작성.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압박이 아닌 관여를 통한 인권개선의 경우 북한과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와 정부를 통한 기술협력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가입하고 참여하고 있는 유엔 내외의 기구와 제도 그리고 북한과 남한 동시수교국⁸⁰ 또는

⁸⁰ 북한은 2009년 12월 기준으로 161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다. 2001년 138개국에서 23개국 이 늘었다. 아주에서 25개국, 미주에서는 24개국, 유럽에서는 49개국, 중동은 17개국, 아프리카는 46개국이다. 남한 및 북한 동시 수교국은 158개국이다. 미주에서는 미국, 볼리비아, 아이티,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11개국은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고 북한과 단독수교를 맺은 국가는 쿠바가 유일하다. 아프리카 46개국은 모두 남한·북한 동시 수교국이다. 유럽의 경우 에스토니아, 프랑스, 안도라, 모나코는 북한과 국교가 없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스라엘이 북한과 미수교국이고, 시리아는 북한과만

서울에 거주하면서 북한 대사 역할을 겸하는 국가기⁸¹ 구체적으로 잠재적인 인권 기술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영국, 스웨덴, 스위스, 아시아의 경우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기술협력 제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인권 기술협력 방안

앞에서 북한에 대한 기술협력의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을 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성 여부는 북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 있다. 현재 북한과 유엔 및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당분간 인권 분야의 기술협력은 어렵다고 본다.

잘 알려졌듯이 현재 유엔 인권기구와 제도의 경우 북한이 참여 또는 협력을 유지하는 것은 4대 인권조약과 UPR이 유일하다. 즉 북한이 처음부터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 COI와 직접 연관된 기술협력은 북한 당국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는

수교를 맺고 있다. 북한의 재외공관은 49개이고, 북한에는 15개국의 외교공관이 있다.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는 아주지역에서 베트남, 인도, 몽골, 인도네시아, 중화인민공화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이다. 미주에서는 쿠바와 브라질, 유럽에서는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스웨덴, 독일, 영국, 체코가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시리아, 이란, 이집트,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이다. 리비아는 북한에 모두 경제협력 대표부를 두고 있다.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도 북한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북한은 재외에 대사관을 42개, 영사관은 3개, 대표부는 4개를 두고 있다. 자국민 보호 업무를 하는 영사관보다 국가의 경제외교 등의 연락 업무를 하는 대표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대표부는 과거 11개였지만 현재는 4개로 축소되어 있다. 유럽에 국제기구가 많아 2001년 7개였던 것이 2010년 말 현재 3개로 줄었다. 이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현실도 일부 반영한다. <www.wikipedia.org>. (검색일: 2015.10.10.).

⁸¹ 한반도 클럽 구성 국가(21)

- ① 유럽(15) :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터키, 포르투갈, 노르웨이, EU,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덴마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 ② 아주(2) : 뉴질랜드, 호주 / 미주(3) : 멕시코, 캐나다, 과테말라 / 중동(1) : UAE

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자발적으로 또는 마지못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환경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다양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만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즉 기술협력이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동의를 하게 하는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는 차원에서 이산가족 등 분단에서 비롯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협력과 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기술협력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구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북한 대상 인권 기술협력을 국제기구와 양자, 국가와 비국가행위자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 표 IV-5 행위자의 특성과 내용에 따른 구분

	다자 (유엔)	양자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최고대표사무소 (4대 조약기구, UPR 등) ▪ 동(북)아시아 SDGs 이행 협력 ▪ 동(북)아시아 인권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수교국 (SDGs와 인권역량강화 등)
비국가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시아 도시 협력 	

출처: 저자 작성.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협력에 대한 제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직접적 인권 기술협력의 경우 북한이 가입한 4대 인권조약의

이행 관련 기술협력이다. 예를 들어 조약위원회의 경우 북한은 2001년 자유권위원회, 2003년 사회권위원회, 2005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9년 아동권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심의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심의 이후 권고안을 수용하였다. 북한 정부가 아동권위원회 위원을 북한에 자발적으로 초청한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 정부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해서는 전면 거부하면서 조약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부 협력하는 태도를 취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정부는 유엔 인권기구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동기에서 비롯된 조치였던 간에 조약기구를 통한 인권 기술협력의 사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북한이 참여한 유엔 UPR 권고안 이행 관련 기술협력이다. 북한은 1차 때와 달리 2014년 5월 2차 UPR의 경우 268개 권고안 중 113개를 수용했다. 비록 수용한 권고안의 수준과 내용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지만 일단 적지 않은 국제사회의 권고안을 수용했다는 사실은 기술협력의 관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유엔과의 다자간 인권 기술협력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UPR에서 북한에 권고안을 제시한 국가가 그 권고안 내용을 가지고 인권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UPR 과정에서 민간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남북한 또는 동북아 민간 차원에서 먼저 UPR에서 NGO의 역할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셋째,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활용하여 인권 관련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이다.⁸²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 이수용 외교장관의 연설을 통해 SDGs 채택을 지지하였고 SDGs 이행에서 과학 기술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의 내용 중 교육과 인권교육 그리고 효과적인 제도와 사법정의 분야 등 거버넌스 분야에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을 추진해 볼 수 있다. 2030 의제 문서 67항에서는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기술

82-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topics>>. (검색일: 2015.11.16.).

-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 목표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며 영양상태를 개선하며 지속가능 농업을 증진한다.
-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
- 목표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 목표 6. 모든 사람을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 목표 7. 모든 사람을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을 확립한다.
- 목표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 목표 9. 복원력이 있는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진흥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 목표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확립한다.
-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행동을 시행한다.
-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
- 목표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억제한다.
-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확대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교육 분야 세부목표 4.7은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인권교육, 평화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⁸³ 이를 근거로 남북 교육 및 인권교육 분야의 기술협력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다루는 16번째 목표의 효과적 제도와 사법정의 등의 세부목표를 근거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넷째는 동북아 차원에서 인권과 연관성이 높은 법치, 사법정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북한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법제를 가진 중국과 함께 몽골,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동북아법치포럼을 개최하여 각국의 전문가와 정책담당자의 교류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권 대신 인권의 핵심 원칙인 법치를 각국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발전권, 평화권 등 북한과 동북아 현실과 연관이 높은 제3세대 인권 논의를 포함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논의의 장으로 중국의 사례에서 검토했던 북경인권포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다. 헬싱키 방식에 대한 논란과 북한의 거부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섯째는 국가 중심이 아닌 지방정부와 도시가 주체가 되어 동북아 차원에서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울란바토르 시가 2014년 8월 주최한 동북아시아 시장 회의⁸⁴처럼 북한과 남한을 포함한 동북아

⁸³- 세부목표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과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공감대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획득하도록 보장

⁸⁴- 인포몽골리아, “The Northeast Asian Mayor’s Forum successfully finishes in Ulaanbaatar, Mongolia,” <<http://www.infomongolia.com/ct/ci/8244>>. (검색일: 2015.11.16.).

국가의 도시 간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나중에 인권 기술협력의 계기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결의안과 보고서⁸⁵ 및 국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인권도시⁸⁶를 연계한 교류 협력도 구체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제 21 운동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1번의 도시와 정주권을 연결해서 남북 또는 동북아 도시 간 협력의 의제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3. 남북 양자 간 관계에서 기술협력 가능성 논의

앞에서는 주로 북한과 국제기구 간 다자적 관점에서 기술협력 가능성을 고찰한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남북관계 동학을 고려했을 때, 남북 양자 간 관계에서의 기술협력 가능성은 어떠한가?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한 해의 남북관계의 변화를 고찰해 보면, 8·25 합의 이후,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9월 중순 이후 문화, 종교, 스포츠 등의 영역에서 남북 간 민간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8·25 합의에서 제시되었듯이 이산가족 상봉, 당국 간 회담, 민간교류 등이 현재 남북관계의 주요 사안들이다. 한국 정부 또한 8·25 합의 이후, 보다 적극적 차원에서 대북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에 호응하여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는 등 남북 간 인도적 사안 해결에 자그마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남북 간 해빙 기류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⁸⁵ UN Doc. A/HRC/30/49 (7 August 2015).

⁸⁶ 한국인권재단 도시와 인권 아카이브, <<http://www.humanrights.or.kr/?mid=archive&category=1439>>. (검색일: 2015.11.16.).

냉엄한 현실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 당국의 명백한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단문제 혹은 인권 사안에 대한 입장에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북 확성기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체제 및 최고존엄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인권 개선 사안이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이 모니터링을 넘어, 이미 책임성 규명 그 중에서도 최고지도층에 대한 국제형사법적 처벌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대화의 협상전략으로 북한인권 이슈를 언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또한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서 대남비난 수위를 조정하고 있지만, 한미군사훈련 혹은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은 직접적이고 명시적 방법보다는 간접적이고 암묵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남북 간 증대된 민간교류 이후 지속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금강산 사업 재개 등 당국 간 회담을 통한 이슈 연계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권, 인도적 사안, 개발협력 등 민생협력 사업에 있어 한국 정부 또한 보다 기민하고 신중한 전략적 접근이 요청된다.⁸⁷

북한과의 인권 분야 기술협력의 경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 및 남북관계의 다양한 동학을 심분 반영하여 양자적 차원의 직접적 방식보다는 다자적 국제기구의 틀을 활용하는 간접적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양자적 대화의 틀 속에서 인권 관련 기술협력

⁸⁷- 홍용표, “남북관계 현황,” (제2차 KINU 서초포럼, 2015.10.16.).

논의를 전개해야 할 순간도 분명 찾아올 것이다. 이 경우 한국 정부는 보다 세부적 차원에서 법치지원, 인권교육 지원 등의 지원을 통한 역량 구축 및 종교, 스포츠, 예술, 문화 등 교류를 통한 민간접촉 확대 (people to people contact) 등 비정치적 분야를 중심으로 먼저 접근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정권 차원의 근본적 개혁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변화시키는 간접적·점진적 접근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및 통일 정책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원칙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다. 2014년 제안된 드레스덴 선언이 좋은 예이다.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확대, 민족 동질성 회복의 3대 기둥을 기반으로 남북 간 정치·제도적 통일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통합을 지향하는 평화통일 협력 구상을 통해 한국사회 및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 및 통합에 대한 관심 및 지지도가 크게 상승한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북한과의 인권 분야 기술협력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정부의 통일에 대한 강조는 자칫 북한 당국에게 있어서는 공세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⁸⁸ 기술협력의 목적이 수혜국이 기본적으로 수용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할 때,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은 자칫 논의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핵심은 한국 정부가 명확한 원칙을 설정하되, 이를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전략적 접근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략적 접근 자체가 원칙에 대한 양보를 항상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3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

⁸⁸- Katharina Zellweger,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방원 간담회, 2015.11.6.).

정부가 남북관계와 인도적 사안에 관한 한, 원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을 때, 북한과의 타협과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물론 상봉한 이산가족들의 숫자는 전체 이산가족의 규모를 고려하면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고, 따라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또 강조하고 있는 상봉 정례화,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주요 사안에 있어서는 여러 기회를 통해 꾸준히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 또한 8·25 합의를 통해 주어진 한반도 상호 교류·협력의 기회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남북관계의 해빙 무드 속에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응하여 유엔 인권특별대표와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를 초대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대화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는 당국 간 회담에서 북한 내 취약계층 문제, 이산가족 사안, 인도적 지원 사안, 농촌지원사업, 법치 및 인권교육 지원, 법조인 교류, 종교인 교류 등 정부 대 정부 간 교류협력 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people to people contact)의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간교류 증진을 통해 환경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남북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국가인권기구 설립, 국가인권행동계획 지원 등 제도적 차원의 역량구축에서부터 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 등 각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 간 합의에 도달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단계적 차원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안건으로 제안하여 지속적인 대화의 기회를 활용해 나가는 지혜와 전략이 요청된다.



V. 결론



북한인권 개선 관련 국제사회의 기술협력에 대한 논의는 책임성 규명만 강조함으로써 자칫 치우치기 쉬운 북한인권 개선전략의 균형을 복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인권 개선을 병행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참여해 온 4대 조약위원회 및 UPR 절차 및 권고사항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요청된다.

한편 기술협력 관련 각국의 사례는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기술협력, 나아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기술협력 및 인권대화를 제안함에 있어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캄보디아 사례의 경우, 유엔 인권센터 현장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기술협력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캄보디아 정부 차원에서는 인권 분야 기술협력에 소극적이며 선택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유엔 OHCHR 차원의 현장사무소를 통해 이러한 장애가 극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OHCHR 차원의 현장사무소는 없지만, 지난 6월 서울에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Human Rights Office in Seoul)가 간접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인권사무소는 캄보디아를 비롯하여 인권사무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의 경우는 1992년부터 국별 인권결의가 지속적으로 채택되었고, 특별보고관 또한 활동하였다는 측면에서 북한과 상당 부분 유사점을 가진다. 미얀마 사례가 주는 가장 큰 함의는 2011년 개방 이후, 국제사회와 본격적으로 전개된 기술협력 활동과 관련해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미얀마 국민들은 개방과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부 중심의 정치체제에 만족하지 못하여 결국 더 큰 민주화 및 자유를 추구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개방정책으로 인한 유엔

I
II
III
IV
V

및 국제사회와의 기술협력 노력은 결국, 미얀마 내에서 더 나은 민주화 및 자유에 대한 욕구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리랑카 및 중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내부 정치적 동학이 외부와의 협력에 때로는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스리랑카의 경우, 유엔 차원의 조사단이 구성되고, 전문가 패널을 통해 보고서가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COI 보고서와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시민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 혹은 국제정치적 논리에 의해 인권논의에 대해 방어적이고 적대적 태도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북한과 유사성이 있다. 중국 또한 북한과 같이 주요 국제 인권조약 중 5개 인권조약에 가입 비준했고, 개인보다는 집단의 권리를 중시하며, UPR에 따른 심의를 두 번 받았다는 점도 유사하다. 2014년 북한은 자국의 인권상황을 설명하는 백서를 발간하고, 유엔에서 설명회를 가지기도 했는데, 중국 또한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제사회에 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합의와 변화가 곧바로 자국 내 인권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많은 경우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에 대한 형식적 회피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제도적 조치마저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받기 때문에 인권의 규범화 및 내재화를 통한 진정한 인권개선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결국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그 중에서도 기술협력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비정부행위자, 개별국가 등 다양한 국제적 행위자의 노력과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당국의 의지, 호응, 협조, 나아가 북한 당국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 신장과 인권개선을 위한 주도적 역할이 요청된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권고사항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관건은 이러한 제안 및 실천과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 역량, 노력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실천의지가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이러한 대내외적 정책환경을 다방면으로 고려하되, 특히 본 연구에서 강조한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전략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입안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국내적 상황 속에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의 동학 속에서 변화하는 국제인권 논의동향을 반영하되, 이를 양자적 차원의 대북 인권정책에 적절히 투영해야 한다. 핵심은 북한 당국과의 대화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상호이해와 소통 증진을 통해 북한이 수용가능한 정책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대화의 모멘텀으로 삼는 것이다. 특히 현재처럼 북한이 COI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에 대해 정치화 및 적대시 전략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지속하는 한, 인권 분야에서 건설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북한 당국이 인권개선 영역에서 제도화를 넘어서서 규범화 및 내재화의 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이금순·김수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_____. 『북한인권침해 구조 및 개선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9.

이금순·도경옥.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자료집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4.

한동호.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한동호·도경옥.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Forsythe, David.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Barnett, Michael and Martha Finnemore. *Rules for the Worl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lob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Risse, Thomas, Stephen Ropp, and Kathryn Sikkink.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wiss Cooperation Strategy Sri Lanka 2013~2015*. Sri Lanka, 2013.

2. 논문

See, Geoffrey K. and Andray Abrahamian. “Making Training More Effective for North Koreans by Separating Ideation from Capacity-Building.”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2014.

3. 기타 자료

Voice of America.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www.ohchr.org>.

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인포몽골리아. <www.infomongolia.com>.

일본 국제협력기구. <www.jica.go.jp>.

캄보디아 유엔 인권최고사무소. <cambodia.ohchr.org>.

테트라 테크. <www.tetratedpk.com>.

한국인권재단. <www.humanrights.or.kr>.

CSHRS. <www.chinahumanrights.org>.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sustainabledevelopment.un.org>.

United Nations. <www.un.org>.

UN Association of China. <www.unachina.org>.

USAID. <www.usaid.gov>.

홍용표. “남북관계 현황.” 제2차 KINU 서초포럼. 2015.10.16.

Katharina Zellweger.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방원 간담회. 2015.11.6.

Signe Poulsen. “UN 북한인권사무소 북한인권 논의 동향.” 방원 간담회. 2015.9.7.

유엔 문서.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7 February 2014).

_____. UN Doc. S/RES/668 (1990).

_____. UN Doc. E/CN.4/RES/1992/58 (3 March 1992).

_____. UN Doc. E/CN.4/1993/37 (17 February 1993).

_____. UN Doc. E/CN.4/RES/1993/6 (19 February 1993).

_____. UN Doc. E/CN.4/1994/73 (24 February 1994).

_____. UN Doc. A/49/635/Add.1 (3 November 1994).

_____. UN Doc. A/50/681/Add.1 (26 October 1995).

_____. UN Doc. E/CN.4/1996/92 (2 February 1996).

_____. UN Doc. E/CN.4/1997/84 (31 January 1997).

_____. UN Doc. E/CN.4/1998/94 (11 February 1998).

_____. UN Doc. E/CN.4/1999/100 (3 February 1999).

_____. UN Doc. E/CN.4/2000/108 (14 January 2000).

_____. UN Doc. E/CN.4/2001/102 (9 January 2001).

_____. UN Doc. A/56/230 (31 July 2001).

_____. UN Doc. CCPR/CO/72/PRK (27 August 2001).

_____. UN Doc. A/57/277 (6 August 2002).

_____. UN Doc. E/CN.4/2003/113 (9 January 2003).

- _____. UN Doc. E/C.12/1/Add.95 (12 December 2003).
- _____. UN Doc. E/CN.4/2005/111 (23 December 2004).
- _____. UN Doc. CEDAW/C/PRK/CO/1 (22 July 2005).
- _____. UN Doc. E/CN.4/2006/105 (24 January 2006).
- _____. UN Doc. A/HRC/4/95 (18 January 2007).
- _____. UN Doc. A/HRC/7/56 (11 February 2008).
- _____. UN Doc. A/HRC/RES/9/15 (18 September 2008).
- _____. UN Doc. A/HRC/RES/10/27 (27 March 2009).
- _____. UN Doc. CRC/C/PRK/CO/4 (27 March 2009).
- _____. UN Doc. A/HRC/12/41 (5 August 2009).
- _____. UN Doc. A/HRC/WG.6/6/PRK/1 (27 August 2009).
- _____. UN Doc. A/HRC/RES/13/25 (15 April 2010).
- _____. UN Doc. A/HRC/15/47 (16 September 2010).
- _____. UN Doc. A/HRC/17/9 (24 March 2011).
- _____. UN Doc. A/HRC/RES/16/24 (12 April 2011).
- _____. UN Doc. A/HRC/18/47 (21 September 2011).
- _____. UN Doc. A/HRC/RES/19/2 (3 April 2012).
- _____. UN Doc. A/HRC/RES/19/21 (26 April 2012).
- _____. UN Doc. A/67/383 (25 September 2012).
- _____. UN Doc. A/RES/67/233 (24 December 2012).
- _____. UN Doc. A/HRC/22/38 (11 February 2013).
- _____. UN Doc. A/HRC/RES/22/1 (9 April 2013).
- _____. UN Doc. A/HRC/RES/22/14 (10 April 2013).
- _____. UN Doc. A/HRC/22/58 (17 April 2013).
- _____. UN Doc. A/HRC/24/32 (19 September 2013).
- _____. UN Doc. A/HRC/WG.6/19/PRK/1 (30 January 2014).
- _____. UN Doc. A/HRC/25/23 (24 February 2014).
- _____. UN Doc. A/HRC/25/64 (2 April 2014).

- _____. UN Doc. A/HRC/RES/25/1 (9 April 2014).
- _____. UN Doc. A/HRC/RES/25/26 (15 April 2014).
- _____. UN Doc. A/HRC/27/41 (24 July 2014).
- _____. UN Doc. A/HRC/27/43 (15 August 2014).
- _____. UN Doc. A/HRC/28/42 (19 January 2015).
- _____. UN Doc. A/HRC/RES/28/23 (2 April 2015).
- _____. UN Doc. A/HRC/30/49 (7 August 2015).
- _____. UN Doc. A/HRC/30/61 (28 September 2015).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외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외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합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욱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	-------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옥 외	23,000원

연구보고서

2013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콘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회 편	16,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조한범 외	

▣ 협동연구총서 ▣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곤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 Study Series ■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옥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중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에촉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증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연례정보고서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10,000원

학술회의총서 비매품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평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기 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성 명*		입 금 일 자*	
소 속*		입 금 자 (신청자와 다를 경우)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전 화		이메일
	핸드폰		F A X
이메일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성명, 입금일자,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 선택사항: 입금자, 이메일서비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통일한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통일연구원

www.kinu.or.kr



9 788984 798267

ISBN 978-89-8479-826-7